

목차

대학원생 권리장전	1
2026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3
2026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5
대학원 학과 안내	7
1. 입학부터 졸업까지 개요	8
2. 수강신청 및 성적 확인	10
3. 수료(졸업)기준 학점	11
3-1. 수료(졸업)기준 학점	11
3-2. 과정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11
4. 수강신청 방법	12
4-1.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	12
4-2. 전공과목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12
4-3. 선수과목 수강신청	13
4-4.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3
5. 휴학 및 복학, 재입학 안내	14
5-1. 휴학	14
5-2. 복학	15
5-3. 재입학	15
6. 등록안내	16
6-1. 정규등록	16
6-2. 학점등록	16
6-3. 연구등록	17
6-4. 논문등록	17
7. 학위논문심사 및 시험 관련 세부 사항	18
7-1. 논문(대체)지도교수 배정	18
7-2. 논문(대체)지도교수 자격	18
7-3. 논문(대체)지도교수 변경	18
7-4.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변경	19

7-5. 학위청구논문대체 방식 변경	19
7-6.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20
7-7.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21
7-8.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	21
7-9.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22
7-10. 외국어시험	22
7-11. 외국어시험 면제	22
7-12. 종합시험	23
7-13. 연구윤리 안내	24
7-14. 중간발표	25
8. 장학 주요 안내	26
9. 생활안내	27
9-1. 병무 안내	27
9-2. 학번부여 안내	28
9-3.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안내	28
9-4. 제증명 발급 안내	28
9-5. 학생증 발급 안내	29
9-6. 중앙도서관 안내	30
9-7. 주차권발급안내	31
9-8. 웹정보서비스 이용안내	32
9-9. 기타	32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33
대학원 입학에 관한 내규	48
대학원 수업에 관한 내규	50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54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55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내규	67
타 대학원 학점인정 및 제한에 관한 내규	70
선수과목에 관한 내규	71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73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76
장학금 및 학술행사에 관한 내규	78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관한 내규	82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84
석·박사통합과정 내규	91
학습경험 학점인정 및 제한에 관한 내규	92
석사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97
학석사 연계과정 내규	101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내규	109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행 과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 1학기 : 03월 03일(화) 개강 - 06월 19일(금) 종강

학기	일 자	학사 진행 사항		비고
1학기	02.10(화) ~ 02.24(화)	1.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계획표 제출 2. 재학생 선수과목 이수계획표 변경원 제출		수업/학적
	02.11(수) ~ 02.13(금)	재학생 수강신청		수업/학적
	02.24(화) ~ 03.05(목)	수료생 등록(연구등록 및 논문등록)		논문/시험
	03.03(화)	1학기 개강		개강
	3월 中	재학생 정규등록(학점등록)		입학/장학
	3월 中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
	3월 中	종합시험 출제과목 지정(학과)		논문/시험
	03.03(화) ~ 03.06(금)	재학생 수강신청 변경 및 신입생 수강신청		수업/학적
	03.03(화) ~ 03.10(화)	교육실습 관련 서류 제출 및 실습비 납부		교직
	03.05(목) ~ 03.11(수)	편입생 지도교수 배정 신청		논문/시험
	03.10(화) ~ 03.12(목)	외국어시험 접수(수납)		논문/시험
	03.17(화) ~ 03.31(화)	1.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입력 및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 이상)	2개 중 택 1	논문/시험
		석사학위논문 대체 희망원 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 이상)		
	03.18(수) ~ 03.24(화)	외국어시험 진행		논문/시험
	03.18(수) ~ 03.25(수)	전일제 장학생 신청(신입생의 경우 개강 후 신청)		입학/장학
	03.18(수) ~ 03.26(목)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수업/학적
	03.19(목)	일반휴학 및 복학 마감		수업/학적
	03.25(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마감		교직
	03.30(월)	대학원 모집요강 공고		입학/장학
	4월 中	성인지 교육		교직
		실험실습비 지출 진행		예산
	4월 ~ 7월 中	1. 신(편)입학 및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원서 접수 2. 신(편)입학 면접진행		입학/장학
	04.07(화) ~ 04.09(목)	종합시험 접수(수납)		논문/시험
	04.08(수) ~ 05.13(수)	학과 신설신청서 접수		정원
	04.15(수) ~ 04.21(화)	종합시험 진행		논문/시험
	04.15(수) ~ 05.06(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중간발표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1학기 전까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시험
	04.28(화)	대각개교절		휴업일
	05.01(금)	근로자의날		휴업일
	05.05(화)	어린이날		휴업일
	05.07(목) ~ 05.12(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		논문/시험

학기	일 자	학사 진행 사항	비고
		석사학위논문 대체 심사원 제출	
	05.15(금)	개교기념일	휴업일
	05.19(화) ~ 05.21(목)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심사비 및 지도비 수납	논문/시험
	05.25(월)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휴업일
	05.27(수) ~ 06.04(목)	수업평가	수업/학적
	05.28(목)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논문/시험
	예비심사 종료 후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본심사 시작	논문/시험
	6월 中	학술공로 및 우수논문 장학금 신청	입학/장학
	06.01(월)	육일대재	휴업일
	06.02(화) ~ 06.18(목)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관련 서류 제출	교직
	06.03(수)	지방선거일	휴업일
	06.05(금) ~ 06.12(금)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	논문/시험
	06.08(월) ~ 06.12(금)	보강기간(15주차)	수업/학적
	06.12(금)	실험실습비 지출 마감	예산
	06.15(월) ~ 06.19(금)	기말시험	수업/학적
	06.19(금)	1학기 종강	종강
	06.25(목)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논문대체) 본심사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논문/시험
	7월 中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도서관 업로드	논문/시험
	7월 中	성적사정 및 졸업사정	수업/학적
	7월 中	주임교수 변경 신청	교원
	07.01(수)	다음학기 수업시간표 제출 마감	수업/학적
	07.03(금)	성적단표 입력 및 제출마감(교원)	수업/학적
	07.03(금)	학적변동(전과, 통합과정포기, 조기수료 등) 신청마감	수업/학적
	07.13(월) ~ 07.24(금)	개설강의 수업계획서 입력(교원)	수업/학적
	07.27(월) ~ 07.31(금)	하계 집중휴가기간(교내 행정부서 휴무)	휴무일
	08.04(화) ~ 08.06(목)	재학생 수강신청	수업/학적
	08.11(화) ~ 08.25(화)	1.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계획표 제출 2. 재학생 선수과목 이수계획표 변경원 제출	수업/학적
	08.17(월)	광복절 대체휴일	휴업일
	08.20(목)	하계 학위수여식(2025학년도 후기)	행사
	8월 中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등록

※ 학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강기간: 휴강으로 인한 보강은 15주 수업기간 중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15주까지 보강을 미실시한 교과목은 보강기간에 보강을 실시하고 16주차에 기말시험 실시 후 종강하며, 15주까지 보강이 완료된 교과목은 15주차에 기말시험을 실시한 후 종강함

2026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 2학기 : 08월 31일(월) 개강 - 12월 18일(금) 종강

학기	일 자	학사 진행 사항		비고
2학기	08.25(화) ~ 09.03(목)	수료생 등록(연구등록 및 논문등록)		논문/시험
	08.25(화) ~ 09.03(목)	전일제 장학생 신청(신입생의 경우 개강 후 신청)		입학/장학
	08.31(월)	2학기 개강		개강
	9월 中	재학생 정규등록(학점등록)		입학/장학
	9월 中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
	9월 中	종합시험 출제과목 지정(학과)		논문/시험
	09.01(화) ~ 09.03(목)	재학생 수강신청 변경 및 신입생 수강신청		수업/학적
	09.01(화) ~ 09.03(목)	편입생 지도교수 배정 신청		논문/시험
	09.01(화) ~ 09.09(수)	교육실습 관련 서류 제출 및 실습비 납부		교직
	09.08(화) ~ 09.10(목)	외국어시험 접수(수납)		논문/시험
	09.11(금) ~ 09.30(수)	1.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입력 및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 이상)	2개 중 택 1	논문/시험
		석사학위논문 대체 희망원 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 이상)		
	09.16(수) ~ 09.22(화)	외국어시험 진행		논문/시험
	09.16(수) ~ 09.30(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수업/학적
	09.17(목)	일반휴학 및 복학 마감		수업/학적
	09.24(목) ~ 09.25(금)	추석연휴		휴업일
	09.30(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마감		교직
	09.30(수)	대학원 모집요강 공고		입학/장학
	10월 中	성인지 교육		교직
		실험실습비 지출 진행		예산
	10월 ~ 12월 中	1. 신(편)입학 및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원서 접수 2. 신(편)입학 면접진행		입학/장학
	10.05(월)	개천절 대체휴일		휴업일
	10.06(월) ~ 10.08(수)	종합시험 접수(수납)		논문/시험
	10.09(금)	한글날		휴업일
	10.13(화) ~ 10.22(목)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중간발표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1학기 전까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시험
	10.14(수) ~ 10.20(화)	종합시험 진행		논문/시험
	10.29(목) ~ 11.03(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		논문/시험
		석사학위논문 대체 심사원 제출		
	11.10(화) ~ 11.12(목)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심사비 및 지도비 수납		논문/시험
	11.23(월)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논문/시험

학기	일 자	학사 진행 사항	비고
	예비심사 종료 후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본심사 시작	논문/시험
	11.24(화) ~ 12.03(목)	수업평가	수업/학적
	11.27(금)	실험실습비 지출 마감	예산
	12월 中	학술공로 및 우수논문 장학금 신청	입학/장학
	12.01(화) ~ 12.17(목)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관련 서류 제출	교직
	12.04(금) ~ 12.11(금)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	논문/시험
	12.07(월) ~ 12.11(금)	보강기간(15주차)	수업/학적
	12.14(월) ~ 12.18(금)	기말시험	수업/학적
	12.17(목)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논문대체) 본심사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논문/시험
	12.18(금)	2학기 종강	종강
	12.25(금)	성탄절	휴업일
	12.30(수)	다음학기 수업시간표 제출 마감	수업/학적
	12.31(목)	성적단표 입력 및 제출마감(교원)	수업/학적
	12.31(목)	학적변동(전과, 통합과정포기, 조기수료 등) 신청마감	수업/학적
	12월 말 ~ 1월 中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도서관 업로드	논문/시험
	01.01(금)	신정	휴업일
	1월 中	성적사정 및 졸업사정	수업/학적
	1월 中	주임교수 변경 신청	교원
	01.11(월) ~ 01.22(금)	개설강의 수업계획서 입력(교원)	수업/학적
	02.08(월) ~ 02.09(화)	설날 연휴	휴업일
	02.11(목) ~ 02.16(화)	재학생 수강신청	수업/학적
	02.16(화) ~ 02.25(목)	1.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계획표 제출 2. 재학생 선수과목 이수계획표 변경원 제출	수업/학적
	02.19(금)	동계 학위수여식(2026학년도 전기)	행사
	2월 中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등록

※ 학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강기간: 휴강으로 인한 보강은 15주 수업기간 중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15주까지 보강을 미실한 교과목은 보강기간에 보강을 실시하고 16주차에 기말시험 실시 후 종강하며, 15주까지 보강이 완료된 교과목은 15주차에 기말시험을 실시한 후 종강함

대학원 학과 안내

학과명	주임교수	교수실	사무실	학과명	주임교수	교수실	사무실
간호학과	박윤희	6028	6226	식품생명공학과	박경민	6681	6667
건축공학과	김재수	6712	6704	식품영양학과	손정민	6656	6655
건설환경공학과	최혁순	6713	6792	신문방송학과	김선남	6421	6416
경영학과	나상균	6236	6272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7362	7361
경제학과	최남진	6282	6276	약학과	이성희	6820	-
경찰행정학과	이명우	6902	6901	언어치료학과	박성지	6057	6065
고고미술사학과	유미나	6437	6169	영어영문학과	박하정	6154	6153
교과교육학과	이혜진	6279	6511	원불교학과	고시용	6123	6112
교육학과	김경현	6552	6860	원예학과	김호철	6682	6669
국어국문학과	임석규	6144	6148	유아교육학과	서현선	6426	6427
군사학과	김영성	6062	5270	음악문화학과	장소현	6603	-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박은선	6354	6352	의생명과학과	서재호	6775	5802
기계공학과	김정환	6686	5276	의학과	오테훈	-	5802
글로벌한국문화융합학과	강연호	6043	5727	일어교육과	염미란	6521	6520
농학과	김옥진	6668	6626	작업치료학과	최유임	6955	6954
도시공학과	이경찬	-	6725	전기공학과	진창성	6298	6731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김옥진	6668	6626	전자공학과	조경주	6884	6738
디자인학과	김인수	6333	6332	전자융합공학과	조준호	6312	-
문예창작학과	이주라	6044	6041	정보통계학과	고미화	6184	6086
미술치료학과	홍선미	6391	-	정보통신공학과	김용갑	6695	6695
미술학과	이화준	6340	6591	조형미술학과	황나영	6614	6591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고춘수	6092	6086	지능정보융합공학과	강선경	6025	7115
반려동물산업학과	김옥진	8275	6626	철학과	김현주	6875	6143
법학과	윤상민	6468	-	체육학과	송제호	6895	6201
보건학과	이상열	859-1052	6390	치의학과	이완	6079	6948
보건행정학과	윤난희	6563	5745	컴퓨터공학과	박혁규	6749	6788
불교학과	고시용	6123	6112	토목환경공학과	최혁순	6713	6792
뷰티디자인학과	장지연	6645	6660	특수교육학과	박성지	6057	6065
사학과	이남희	6132	6169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	최정	6648	6644
사회복지학과	박은아	6537	5745	한국문화학과	고시용	6123	6112
사회적경제학과	원도연	6294	-	한국어문화학과	임석규	6144	6148
산림·환경조경학과	안병철	6675	6824	한문고전학과	정경훈	6528	6525
상담학과	강형원	6831	6861	한약학과	김윤경	6803	-
생물학과	최한길	6579	6086	한의학과	이원용	6916	5193
생물환경화학과	임종옥	6396	6674	행정학과	박민정	6406	6404
소방행정학과	조성	6398	6907	화학공학과	심재오	7281	7276
수학과	김혜선	6572	6570	화학과	조원련	6224	6086
식품산업융복합학과	한연호	6930	-	회계학과	이동녕	6247	6271

1. 입학부터 졸업까지 개요

원광대학교 대학원생을 위한 척척석사 가이드북

대학원 입학 가보자고

교수님 보쌈 준비(완)

첫 번째 학기

- | | | |
|------------------------|------|--------------------|
| 1. 수업을 듣자 | p.8 | 수강신청 및 성적 확인 |
| 2. 내 논문을 지도해주실 교수님을 찾자 | p.16 | 7-1, 7-2, 7-3 지도교수 |

혁이 논문 주제

왜 혁이도 혁이도 배가 고픈가?

두 번째 학기

- | | | |
|-----------------------|------|---------------------|
| 1. 수업을 또 듣자 | p.8 | 수강신청 및 성적 확인 |
| 2. 석사니까 영어 공부도 조금 해볼까 | p.20 | 7-10, 7-11 외국어시험 |
| 3. 이제 슬슬 논문 주제를 정해보자 | p.17 | 7-4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
| | p.18 | 7-6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



척척석사로 레벨업!

네 번째 학기

1. 마지막으로 수업을 듣자	p.8	수강신청 및 성적 확인
2. 이제 학위를 받자	p.19	7-7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7-8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
	p.20	7-9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3. 심사 마친 논문을 제출하자	중앙도서관에 온라인 제출 (세부사항 공지사항 참조)	



종합시험 화이팅..

세 번째 학기

1. 힘들어도 슬퍼도 수업은 듣자	p.8	수강신청 및 성적 확인
2. 논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자	p.23	7-14 중간발표
3. 내 전공에 대해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p.21	7-21 종합시험

2. 수강신청 및 성적 확인

구분	주요 내용	기타사항
수강신청 및 정정 - 매학기 초 - 신입생의 경우, 개강 후 진행	1. 재학생의 경우, 개강 전 개강 1주차에 수강신청을 진행 2.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 석사: 전공9학점 - 박사: 전공12학점 - 통합: 전공9학점 3. 선수과목 이수대상인 경우, 수강신청 가능학점 - 석사: 최대 12학점 - 박사: 최대 15학점 - 통합: 최대 12학점 * 선수과목은 한 학기당 최대 6학점 신청 가능	1. 수강신청 방법: 원광대학교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 정보서비스 → 수강신청관리 메뉴 접속 → 수강신청 및 내역 확인 2. 정정기간: 개강 1주차 3. 선수과목 수강신청 - 석사 및 통합과정: 선수과목 수강신청서 제출 * 석사 및 통합과정 선수과목은 학부에 개설되는 교과목 ** 만약, 학부에 과가 없는 대학원 학과의 경우 대학원에서 별도로 선수과목을 신청함 - 박사과정: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을 선수로 변경하여 신청
과정별 이수학점	1. 석사과정: 졸업 형태에 따라서 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학위논문 / 학술지논문게재자: 전공 24학점 이상 이수 - 졸업시험, 작품, 특하: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 2. 박사과정: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3. 통합과정: 전공 57학점 이상 이수	선수과목: 최대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함 - 선수과목 지정은 입학면접 당시에 결정되며 재학 중 지정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석사 및 통합과정의 선수과목: 학부 개설 교과목 * 선수과목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 제출 - 박사과정 선수과목: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을 선수로 신청
타학과 전공 이수	· 제한 없음	· 타 학과 전공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및 소속학과 주임교수 날인 필요
성적확인	· 6월 또는 12월 종강 이후 확인	

3. 수료(졸업)기준 학점

3-1. 수료(졸업)기준 학점

항 목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57학점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최대 9학점	최대 12학점	최대 9학점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최대 12학점	최대 15학점	최대 12학점
선수과목 수강신청학점	최대 6학점	최대 6학점	최대 6학점
타학과 수강 가능학점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제한 없음		
선수과목 이수학점	학사과정에서 9학점 이내	대학원 개설된 교과목에서 9학점 이내	학사과정에서 9학점 이내

*논문대체 신청자(졸업시험, 작품, 특허)는 30학점, 학술지 논문 게재한 자는 24학점입니다. 논문대체는 석사과정에 한해서 진행되며, 학과별 석사논문대체 제도를 허용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학과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2. 과정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항 목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비 고
수업연한	2년	2년	4년	
재학연한	3년	5년	8년	일반휴학 산입
교원 1인당 한 학기 담당 교과목 수	학기당 최대 1개 교과목	학기당 최대 2개 교과목	학기당 최대 2개 교과목	
교과목 당 폐강 수강인원 수	3명 미만인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점인정 최대범위 (편입학 전적대학 인정학점 + 학습경험 및 학점인정*)	12학점 이내	18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도란? - 입학 전, 입학 중 산업체 근무경력, 연구소 연구경력을 학과 심의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대상

▶ 해당학기 재학생 및 신입생

□ 수강신청 기간 : 2월, 8월(학사일정표 참조)

○ 재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후 학과에서 안내를 받아 진행함

4-1.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내 용
방법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웹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수강신청(입력) 함
절차	- 강의시간표를 확인 한 후 자신의 수강과목을 결정⇒ 학교홈페이지(www.wku.ac.kr)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본인인증 및 서비스신청(신입생은 필수)⇒ 정보서비스⇒ 대학원(과정선택)⇒ 수강신청관리 - 수강신청⇒ 수강신청내역에서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4-2. 전공과목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기당	최대 9학점	최대 12학점	최대 9학점
선수과목 수강대상자	최대 12학점	최대 15학점	최대 12학점

4-3. 선수과목 수강신청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대상	비동일계 학생 및 입학 전형시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비동일계 학생 및 입학 전형시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비동일계 학생 및 입학 전형시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이수학점	○ 학부과목 수강신청 ○ 9학점 이내	○ 전공과목 수강신청 ○ 9학점 이내	○ 학부과목 수강신청 ○ 9학점 이내
학기당 신청 가능학점	학기당 최고 6학점(정규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기당 최고 6학점(정규과목을 포 함하여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학기당 최고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수과목 이수학기에 한하여 정규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 지 가능
방법	○ 선수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및 대학원에 제출 ○ 선수과목 수강신청서를 제출 (대학원 교학과에서 입력)	○ 선수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및 대학원에 제출 ○ 웹정보서비스에서 본인이 입력 (수강구분을 [선수]로 변경하여 수강신청)	○ 선수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및 대학원에 제출 ○ 선수과목 수강신청서를 제출(대 학원 교학과에서 입력)
유의사항	○ 성적이 C(70점)미만인 경우 재수강	○ 성적이 C(70점)미만인 경우 재수 강	○ 성적이 C(70점)미만인 경우 재 수강

4-4.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수강하고자하는 과목의 학수번호, 이수구분(선수, 전공) 등 세부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 및 강의시간표를 참조하여 이미 취득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본인이 반드시 과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 복학예정자의 경우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수강신청기간을 엄수하여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전산입력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수
강신청자로 처리되므로 해당학기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할 경우 변경기간 내에 변경하여야 함
- 선수과목 이수는 입학 시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선수과목 이수계획서"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함
-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과목(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선수과목은 70점미만(C)인 경우 재수강 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수하지 않을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학위청구논문도 제출할 수 없음
- 타학과 전공과목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타학과 전공과목 수강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
하여야 함

5. 휴학 및 복학, 재입학 안내

5-1. 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 휴학을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종 류	질 병 휴 학	○ 제출서류 : 종합병원 진단서(4주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출산 및 임신 휴 학	1.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 2. 자녀 1명당 임신 및 출산 휴학을 각각 한 학기(6개월) 가능
	군 입대 휴 학	1. 군입대 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 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함(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 제출) 2. 군입대 휴학 후 일반휴학이 가능하나 반드시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연장하여야 한다.
	일 반 휴 학	1.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신입생의 경우, 1학기에 신청 가능 3. 석사 및 박사과정 최대 4학기 신청가능하며, 통합과정의 경우 최대 6학기 신청가능
	육 아 휴 학	1. 자녀 육아로 인해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 2. 자녀 1명당 최대 4학기(2년)간 가능
	재 난 휴 학	1.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선포된 경우 2. 증빙서류 및 제출 시기는 별도 안내
신 청 시 기		종강일 ~ 매학기 초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함(학사일정 참조)
휴 학 기 간		1. 일반휴학은 석사 및 박사과정 최대 4학기 신청가능하며, 통합과정의 경우 최대 6학기 신청가능. 단, 입대휴학, 출산휴학, 임신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재난휴학은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군입대 휴학은 군복무 기간동안 가능
휴 학 절 차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와 지도교수 그리고 중앙도서관(대출실)을 경유하여 대학원 교과과에 제출
구 비 서 류		휴학원서(필요시 증빙서류)
유 의 사 항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됨.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으나, 등록을 마친 자는 매학기 초 4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복학

구 분	내 용
복 학 시 기	복학신청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하여야 함.
복 학 절 차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주임(지도)교수 날인 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구 비 서 류	복학원서(군복학 시 병역증명서 혹은 취학승인서를 첨부해야함)
유 의 사 항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등록을 하여야 함

5-3. 재입학

구 분	내 용
재 입학 대상자	제적된 학생으로 제적전의 동일과정 동일학과로 입학을 원하는 자
재 입 학 시 기	신입학 모집시기
재 입 학 절 차	재입학지원서에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구 비 서 류	재입학지원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서
유 의 사 항	○재입학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락함.

6. 등록안내

6-1. 정규등록

구 분	내 용
용 어 정 의	수업연한 동안에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등록
등 록 기 간	매학기 개시 전 등록기간
등 록 절 차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해당은행에 납부 ○웹정보서비스 ⇒ 로그인 ⇒ 정보서비스 ⇒ 대학원(석박사) ⇒ 출력 ⇒ 등록고지서 출력
등 록 금	입학금 및 수업료
유 의 사 항	○석박사과정별로 4학기(통합과정 8학기)이상 반드시 정규등록을 하여야함 ○등록기간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6-2. 학점등록

구 분	내 용
용 어 정 의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마친 자가 졸업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하는 등록
등 록 기 간	소정의 등록기간
등 록 절 차	학점등록 신청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해당은행에 납부
등 록 금	○1학점 ~ 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유 의 사 항	수료에 필요한 수료학점 및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수료하지 못함

6-3. 연구등록

구 분	내 용
용 어 정 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기한(수료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따라서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구비 또는 논문(대체)지도와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 받아야 함.
등 록 기 간	소정의 등록기간
등 록 절 차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및 소정의 등록금 납부
등 록 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10%(세액공제 불가)
유 의 사 항	① 전 과정에 해당되며, 연구등록을 하더라도 추가 수강신청은 불가 ② 지도교수 변경, 연구계획서 제목 변경 등 수료생은 연구등록 후 학사일정 진행 가능 ③ 논문심사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등록해야 함
지 원 사 항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 부여 / 도서대출 및 실험실 이용 / 정기간 및 1일 주차권 구매 가능 학위논문(대체) 연구지도 및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신청자격 부여 각종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연구계획서 제출 및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자격 부여

6-4. 논문등록

구 분	내 용
용 어 정 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대체)제출기한(수료 후 10년)이 경과된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논문(대체)제출자격을 재부여 받기 위하여 하는 등록. 따라서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구비 또는 논문(대체)지도와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대체)등록을 하여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 받아야 함.
등 록 기 간	소정의 등록기간
등 록 절 차	논문등록신청서 제출 및 소정의 등록금 납부
등 록 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20%(세액공제 불가)
유 의 사 항	① 전 과정에 해당되며, 연구등록을 하더라도 추가 수강신청은 불가. ② 지도교수 변경, 연구계획서 제목 변경 등 수료생은 논문등록 후 학사일정 진행 가능 ③ 논문등록은 1회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심사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등록해야 함
지 원 사 항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 부여 / 도서대출 및 실험실 이용 / 정기간 및 1일 주차권 구매 가능 학위논문(대체) 연구지도 및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신청자격 부여 각종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연구계획서 제출 및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자격 부여

7. 학위논문심사 및 시험 관련 세부 사항

7-1 논문(대체)지도교수 배정

구 분	내 용
시 기	1학기말 이전[편(재)입학 학생은 입학 학기초]
대 상	1학기 재학생
방 법	"논문(대체)지도교수 신청서" 작성 → 주임교수에게 제출 → 학과대학원위원회의를 거친 후 → 대학원장에게 제출
제 출 서 류	논문(대체)지도교수 배정신청서 ○ 학과별 지도교수 배정명단

7-2. 논문(대체)지도교수 자격

구 분	내 용
자 격	다음 각호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 소속학과 또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 2. 지도교수의 정년 잔여학기를 고려하여 지도교수 배정 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 1학기 말 배정 시, 3학기 이상 정년 잔여학기가 남아있어야 함 ② 통합과정 - 1학기 말 배정 시, 7학기 이상 정년 잔여학기가 남아있어야 함

7-3. 논문(대체)지도교수 변경

구 분	내 용
시 기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대 상	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경우 학생이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방 법	"논문(대체)지도교수 변경원" 작성 → 신·구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 주임교수에게 제출→ 주임교수는 확인하여 대학원장(교학과)에 전자공문 제출
제 출 서 류	논문(대체)지도교수 변경원
유의사항	변경한 경우 각 학위과정 공히 한 학기 이상 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 단, 동일전공의 경우 예외로 함.

7-4.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변경

□ 제출

구 분	내 용
시 기	매학기 3, 9월 중순부터 다음달 초까지
대 상	1. 석사 및 박사: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지도교수 배정자만 입력가능) 2. 통합과정: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지도교수 배정자만 입력가능)
방 법	· 입력방법: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 시험/연구계획서 관리 → 연구계획서 관리에서 입력 · 입력시기: 지정된 기간에 입력하며, 별도 안내 - 석·박사과정: 2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 변경

구 분	내 용
변경대상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이 일치하나 단순히 논문제목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절차	학위청구논문 심사 중에 변경 할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변경원 작성⇒ 지도교수, 주임교수 및 심사위원장 확인⇒ 대학원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에 변경 할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변경원 작성⇒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대학원 제출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학위청구논문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는 지도교수와 상의 후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계획서 변경원 제출 시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불가.
관련양식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7-5. 학위청구논문대체 방식 변경

구 분	내 용
변경대상	석사논문대체를 희망하였으나,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석사 대학원생(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변경절차	⇒학위청구논문대체 포기원 작성⇒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대학원 제출
유의사항	1. 석사논문대체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각 학과에서 '석사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학기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음 2. 각 학과의 석사논문대체 세부지침을 참고해야 함
관련양식	석사논문대체 포기원

7-6.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구 분	제출자격
석 사 학 위 과 정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 (논문대체 신청자는 30학점, 학술지 논문 게재한 자는 24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연구(논문)등록을 필한 자 4.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대체) 지도를 받은 자 ※ 2018학년도 석사 입학생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석사논문대체 희망원'을 논문대체 심사 1학기 전에 제출한 후에 논문대체 심사 가능 5.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의 경우, 최종 논문(대체)심사 합격까지 선수과목 전체 이수해야 함
박 사 학 위 과 정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36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연구(논문)등록을 필한 자 4.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를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6. 입학 후 다음의 인정 비율에 의한 100%이상의 연구실적 가. SCI급 학술지 : 5인 이내 공동연구 100%, 6인 이상 공동연구 70%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연구 50%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5%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의 경우, 최종 논문심사 합격까지 선수과목 전체 이수해야 함
석·박사통합 과 정	1.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57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연구(논문)등록을 필한 자 4.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를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6. 입학 후 다음의 인정 비율에 의한 100%이상의 연구실적 가. SCI급 학술지 : 5인 이내 공동연구 100%, 6인 이상 공동연구 70%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연구 50%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5%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의 경우, 최종 논문심사 합격까지 선수과목 전체 이수해야 함

7-7.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논문대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심사추천서 1부 3.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4. 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5.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1부 6.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각 1부 7.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1부	1. 공통: 심사신청서, 성적증명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2. 졸업시험: 졸업시험 실시계획서, 출제위원 서약서, 출제위원 추천서 3. 작품: 심사일정표, 심사위원 추천서, 작품설명서, 전시회 또는 공연 팸플렛 4. 특허: 특허증, 특허출원 기술보고서 5. 학술지논문게재: 게재실적물 6.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1부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심사추천서 1부 3. 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기간 이전까지 게재실적 100% (게재예정증명서 불가) 4.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5. 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6.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1부 7.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각 1부 8.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1부

7-8.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

구 분	내 용
신 청 시 기	매년 4(5)월, 10월
신 청 방 법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제반 서류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심사위원 구성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 최대3인까지 외부인사로 선임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공동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 자격	교내·외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또는 해당분야의 권위자
심 사 횟 수 등	예비심사는 석·박사 학위과정 공히 1회 이상 공개심사
	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2회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회 이상 논문심사와 구술심사를 하여야 한다.
	석사논문대체 심사는 1회 이상 실시한다.
심 사 판 정	예비심사 평가는 "가" "부"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4인 이상의 "가"판정을 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 평가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가"로 평가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석사논문대체 심사는 심사위원 2인 이상 "가"로 평가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7-9.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예 비 심 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예비심사평가표 5년간 학과보관)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예비심사 또는 본심사 中 1회 제출)
본 심 사	본심사 결과보고서, 심사요지,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논문심사평가표 및 구술심사평가표는 5년간 학과보관)	
논문대체심사	심사 결과보고서 및 대체인정 증빙서류(심사평가표 및 대체결과물은 5년간 학과보관)	

7-10. 외국어시험

구 분	내 용
응 시 자 격	석·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시 험 시 기	매년 3월과 9월
시 험 과 목	영어, 한국어(외국인) ※ 면제신청자의 경우 원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 및 면제신청서 제출
합 격 기 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신 청 절 차	응시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공인시험(영어 및 한국어)의 경우,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자

7-11. 외국어시험 면제

구 분	내 용
면 제 기 준	1. TOEFL CBT 170점 이상인 자 2. TOEIC 700점 이상인 자 3. TOEFL IBT 79점 이상인 자 4. TOPIK 3급 이상인 자(외국인 학생에 한함) 5. 전적 대학원에서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편입생에 한함) 6. 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7. IELTS 5.5등급 이상인 자 *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어시험은 면제함 * 외국인 학생의 경우 - 입학 후 원광대학교 공식 어학 관련 기관에서 4학기제 중 2개의 학기 이상 수료할 경우 외국어 시험은 면제함
신 청 절 차	면제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전형료는 납부하지 않음)

7-12. 종합시험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24학점(논문대체 신청자는 30학점, 학술지 논문 게재한 자는 2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자 라.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박사학위과정	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36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라.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점 이상인 자.
	석·박사통합과정	가. 7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라.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
시험시기	매년 4월과 10월	
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 3과목,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4과목 이상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신청절차	응시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7-13. 연구윤리 안내

□ 연구윤리 교육 이수 안내

구 분	내 용
목 적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
대 상 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신청(예정)자
이 수 방 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에서 이수 1) 회원가입(소속기관 : 원광대학교 입력 필수) 2) 교육과정 탐색 및 신청 : 탐색 → 온라인교육 → ‘대학원생’ 입력 후 검색 3) 수강신청 ·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 자연과학, 의학, 공학 계열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비 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는 연구 윤리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활용 관련 권장사항 안내

구 분	내 용
운 영 기 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대 상 자	https://safe.koar.kr/
목 적	건전한 학술활동 생태계 조성(부실 학술지 또는 학술행사 여부 파악)
주 요 서 비 스	1) 부실 학술활동 개념 소개 및 국내외 부실 학술활동 관련 동향 안내 2) 학술지 정보, 의심 학술행사 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3) 의심 학술지, 의심 학술행사 신고 및 토론방 제공 4) SAFE 학술정보를 손쉽게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API 서비스 제공
권 장 사 항	1) (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학술행사 참여 前) 본인이 잘 모르는 학술지나 학술행사인 경우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통해 평판을 검색해 보고 주변 연구자들에게 문의해 보기를 권장함 2) (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학술행사 참여 後) 해당 학술지나 학술행사가 부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건전 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연구자들과 토론해 보기를 권장함

□ GPT킬러 안내

구 분	내 용
목 적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책임 있게 활용하고 저작권(출처표기), 권리침해, 명예훼손, 민감정보 유출, 허위조작정보, 정보편향, 오남용 등의 연구윤리 문제 방지
대 상 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신청(예정)자
이 수 방 법	1)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접속 (https://elibrary.wku.ac.kr/) 2) 로그인하기 (* ID, PW : 웹정보서비스 ID,PW와 동일) 3) 화면 상단에 있는 [연구학습지원] - [연구지원도구] - [Copy Killer] 클릭 4) 카피킬러캠퍼스 우측 상단에 있는 [문서평가] 클릭 5) 우측 상단에 있는[문서평가] 클릭 검사할 문서를 업로드한 후 우측 하단에 있는 [검사하기]을 눌러 검사 진행 6) 문서 평가 설정에서 검사 유형-[GPT킬러], 비교 문서-[카피킬러 DB], 표준기준 - [6 어절이상,1 문장이상일치] 문서유형-[학위논문]-[평가하기] 클릭 7) [결과확인] - [전체결과다운로드] 클릭 후 결과확인서 다운로드
비 고	학위청구심사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반드시 확인, AI 활용사실(출처) 공개, 본교 도서관 'GPT킬러'로 교차검증을 권고드리며, AI 결과를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됨

7-14. 중간발표

구 분	내 용
시 기	매년 4월, 10월
대 상	지도교수가 배정되고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자
방 법	·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 논문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자의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 · 연구계획서 내용관련 자료를 제시, 참석자의 질의에 답해야 함 ※ 학위논문심사 한 학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함
제 출 서 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중간발표 결과보고서

8. 장학 주요 안내

종 류	내 용
교육보조장학금	각 학위과정 재학생 중에 강의,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자
공로장학금	대학원 학생회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건학이념 구현에 적극적인 자 또는 학교위상 선양의 공로가 인정된 자로서 학과대학원위원회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술공로 및 우수논문장학금	본교 "교비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고 신청한 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호국1종장학금	국방부 소속 군관계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현역 준위 및 부사관)
호국2종장학금	국방부 소속 군관계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현역 장교)
전일제연구장학금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미취업자로 본교 교수연구실 또는 실험실 등 지정 근무장소에서 주 5일, 주당 40시간, 6개월동안 교수의 연구, 교육을 보조하는 자
봉황1종장학금	타 교내장학금을 받지않는 재학생
봉황2종장학금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자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수업료의 30%)
봉황4종장학금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 부속 각 병원 소속 재직자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수업료의 30%)
학연산장학금	대학원 지정 학·연·산협약기관 종사자로서 학·연·산협동과정 전형으로 입학한 자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수업료의 50%)
산학관연협동장학금	대학원에서 지정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협약체결기관 종사자인 학생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9. 생활안내

9-1. 병무 안내

□ 대학 직장 예비군 안내(의무사항)

↳ 예비군 훈련 대상

- 현역병 및 공익근무 복무를 마친자로 복무를 마친 다음 해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해당되는 자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해부터 현역 계급의 정년 연령까지 편성 (제2국민역은 대상에서 제외)

↳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

-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연간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 실시
- 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휴학·자퇴 등 신분 상실시에는 지역 예비군 부대의 교육계획에 따른다.
- 법규대상자(해외출국자 및 환자)는 사유 발생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관리과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연기 및 보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안내

-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 이전) 의무 종사
-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6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

9-2. 학번부여 안내

학번은 입학과 동시에 학과 단위로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각종시험접수, 각종 증명신청 및 교부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이 학번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휴학, 복학에 관계없이 졸업 시까지 사용한다.

학번 구조	<u>2026</u> ①	<u>1</u> ②	<u>1</u> ③	<u>1</u> ④	<u>001</u> ⑤
①입 학 년 도	: 입학년도(4자리)				
②입학학기	: 입학학기(1자리)				
③대학원 코드	: 대학원 구분코드(1자리)				
④과정코드	: 과정 구분코드[석사(1), 박사(2), 석·박사통합(3)]				
⑤학생 개인별 일련번호	: 년도별 입학생의 일련번호(3자리)				

9-3.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안내

내용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절차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학적부기재사항 변경원"을 다운받아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대학원 교학과에 정정 신청
제출 서류	① 학적부기재사항 변경원(대학원 홈페이지 각종양식 게시판 참조)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웹정보서비스 '개인 신상관리 메뉴'에서 수정하여 대학원에서 중요 공지사항 안내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대상	대학원 졸업생, 휴학생, 재학생, 제적생, 수료생
발급방법	웹정보서비스(로그인)⇒ 증명발급⇒ 대학제증명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 ⇒증명서 신청⇒ 신청⇒ 문서출력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FAX 민원'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수 수 료	교내 : 1건당 1,000원 교외 : 대행수수료(1,000원 +추가 1건당 500원),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가능) ※ 수수료 금액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규가입	회원가입 ⇒ 정보서비스 ⇒ 서비스신청⇒ 주민등록번호입력⇒ 서비스신청하기⇒ 아이핀(ipin)또는 핸드폰 인증 후 재로그인

9-5. 학생증 발급 안내

구분	금융학생증 (전북은행 입출금 겸용)	클리커 (Clicker)
신청 방법 (신규)	▶ 개강 후 1달 이내일 경우 ①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② 개인신상관리 클릭 ③ 자신의 증명 사진을 업로드 ④ 학생회관내 전북은행 방문(신청서 작성) ▶ 개강 후 1달 이후일 경우 ① 학생회관내 전북은행 방문 (증명사진 1매 필수 지참) ※ 전북은행 방문 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 전북은행 통장이 없을 시에는 재학증명서 1부 추가로 지참	도서관 이용 시 필요 ① 스토어에서 '클리커' 앱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② 소속기관에서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선택 ③ 로그인 (웹정보서비스 ID, 비밀번호 동일) ④ App등록 신청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해당 QR Code를 스캔하여 마켓으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수령	신청 후 7일 이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생증 수령 또는 자택으로 등기발송	
재발급	분실 재발급 : 수수료 2,000원	
유의 사항	1.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2. 재학증명서 지참 (전북은행 통장 없을 시)	

9-6. 중앙도서관 안내

□ 이용시간(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 자료열람실(학기중)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09:00 ~ 17:00
- 자유열람실(중앙도서관) : 06:30 ~ 24:00까지 개방
- 자유열람실(학생지원관) : 24시간 개방

□ 대출권한

- 단행본 : 30책 60일(1회 갱신)
- e-Book : 5책 7일
- 비도서 : 2건(당일 - 관내대출)

□ 층별안내

- 1층 : 출입게이트, 안내데스크(Information), 자유열람실, 전자신문/잡지 등
- 2층 : 복합문화공간
- 3층 : 디지털정보센터, PC검색존, 그룹스터디룸
- 4층 : 인문/예술/원불교 자료실
- 5층 : 사회·과학기술자료실
- 6, 7층 : 보존서고 및 고문헌자료실

□ 기타안내

- 자유열람실 좌석발급기

학생증 또는 모바일 이용증을 리딩한 후 열람실과 좌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실을 이용한 후 퇴실할 때에는 반드시 반납 처리해야 함.

□이용시간 : 1회 4시간

□연 장 : 이용종료 한 시간 전부터 연장가능, 연장은 연장한 시간부터 4시간 적용

- 무인반납기

구 분	무인 반납기	자가 대출기
위 치	1층 로비, 학생회관 1층	4층 인문·예술자료실
시 간	24시간	도서관 이용시간

※ 딸림자료가 있는 자료나 예약도서는 자가대출 · 무인반납기에서 대출 · 반납 불가

9-7. 주차권발급안내

□ 정기권

발 급 대 상	재학생(졸업생 휴학생은 불가) 및 수료생 중 연구등록한 자 ※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대학원 교학과 문의(☎ 063-850-5118)
신 청	▶ 방문 신청 : 산학협력2관(11번건물) 1층 차량출입관리실 (☎ 063-850-7788~9) ▶ 웹/모바일 신청 : 파킹조인 접속 (www.parkingjoin.co.kr) 1) 회원가입 2) 제휴 주차장 -[원광대학교 정기권 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파일 추가 - [정기권 신청] 클릭 4) 원광대학교 정기권 등록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 확인 후 승인 대기 5) 관리자 승인 후 문자 발송 * 문자확인 후 파킹조인 접속 후 [마이페이지]→[정기권발급내역]→[카드결제]→[신청완료] * 오기 및 파일 누락 시 승인 반려 -[정기권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금 액	▶ 재학생 : 월 7,000원 (카드결제, 현금 불가) ▶ 수료생 등록자 : 월 11,000원 (카드결제, 현금불가) ※ 단, 경차 이용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50% 할인 ※ 내부 사정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제 출 서 류	①차량등록증 ②재학증명서 ③(차량이 가족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④운전면허증 ※수료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대신 '연구등록증명서'로 대체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신분증 지참 필수

□ 1회 주차권

판 매 대 상	재학생(졸업생 휴학생은 불가) 및 수료생 중 연구등록한 자 ※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구 매 절 차	산학협력2관(11번건물) 1층 차량출입관리실 (☎ 063-850-7788~9)
금 액	1매당 1,500원(카드결제) ※ 내부 사정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필 요 서 류	학생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수료생인 경우 '연구등록증명서'로 대체하며, 대학원 교학과 문의(☎ 063-850-5118)

9-8. 웹정보서비스 이용안내

내 용	본인이 졸업을 위한 각종 시험 및 논문과 선수과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시험 및 논문조회	☐ 논문정보 : 중간발표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 합격여부 ☐ 논문게재실적(박사) : 박사의 경우 100%이상의 연구실적 여부 ☐ 외국어시험 : 외국어 시험 합격여부 ☐ 종합시험 : 종합 시험 합격여부
시험 및 연구계획서 관리	☐ 외국어시험 관리 : 외국어시험 접수 ☐ 종합시험관리 : 종합시험 접수 ☐ 연구계획서관리 : 연구계획서 입력
전형료관리	☐ 고지서출력 : 연구 및 논문등록, 각종 시험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고지서 출력
기 타 조 회	☐ 선수과목리스트 ○ 본인이 이수해야 할 선수과목과 이수여부 확인가능 ※ 미이수 시 수료 및 졸업 불가
증명서 발급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서 증명서 발급 신청

9-9. 기타

- ☐ 성적표는 발송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정보서비스→ 대학원(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성적관리→ 전체 성적 조회

- ☐ 회원가입방법

웹정보서비스→ 신규 가입→ 문자 또는 IPIN 인증→ 서비스 사용

※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수강신청, 성적표, 등록고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기 회원 가입자는 신규 학기 시작 시 자동생성 됨

- ☐ **중요 공지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내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정 1967. 12. 15
개정 2025.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광대학교 건학정신에 바탕하여 대학교육이 목적하는 학술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도야하며 지도적 인격을 완성하고 독창적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5.20, '11.07.28, '15.12.29, '25.12.19>

제2조(학위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개정 '98.2.4.>

② 필요에 따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98.2.4.>

③ 각 학위과정안에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98.2.4, '12.08.27>

제3조(학과와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의 학과는 계열별로 설치하며,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및 계열별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서 산정한다. <개정 '95.10.18, '96.11.18, '99.12.23, '01.3.2, '01.10.31, '02.2.25, '03.10.28, '04.1.14, '04.7.12, '04.10.8, '04.11.22, '07.8.23, '07.12.4, '09.5.27, '10.09.02, '11.01.27, '11.07.28, '12.08.27, '12.12.24, '14.01.02, '14.06.02, '15.06.04, '15.12.29, '17.01.03, '17.05.25, '18.01.03, '18.02.11, '19.07.04, '19.11.19, '20.01.10, '20.07.03, '20.11.05, '21.09.01, '21.11.17, '22.02.25, '23.12.22, '24.12.20>

② 제1항의 각 학위과정의 계열.학과별 입학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99.11.16, 개정 '12.08.27>

③ 제5조의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2.08.27, '15.12.29>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11.07.28, 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개정 '12.08.27>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항신설 '99.11.16, 항전문개정 '06.2.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이 공동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석사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항신설 '19.02.11.> <개정 '25.12.19>

⑤ 각 학위과정 신설 시에는「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의 2분의 1 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 각호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신설 2024. 6. 21.>

1. 인문·사회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4편 이상 <신설 2024. 6. 21.>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6편 이상 <신설 2024. 6. 21.>

3. 예·체능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3편 이상 <신설 2024. 6. 21.>

제2장 입 학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및 입학제한) ①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1.07.28, '15.12.29>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개정 '95.5.20, '96.11.18, '12.08.27>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따라서 가목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04.11.22, '15.12.29>

다. 본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전공분야는 학사과정의 전공학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2.08.27>

2. 박사학위과정 <개정 '95.5.20. '96.11.18.>

가. 국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가목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04.11.22>

다. 본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학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2.08.27, '15.12.29>

② <개정 '11.07.28, 항삭제 '18.02.12.>

③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이 입학 할 때는 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성격상국내 타 대학원에 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와 총장 승인하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99.11.8, '11.07.28, 2024. 2. 23.>

④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입학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9.12.16, 개정 '12.08.27>

⑤ 그 밖의 사항은 본 대학교 해당 모집시기의 모집요강에 따른다. <신설 '19.07.04.>

<조목개정 '12.08.27>

제6조(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개정 '98.2.4., '15.12.29>

②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98.1.12. '00.7.10, '15.12.29>

1. 서류전형<개정 '06.8.31>

2. 구술시험 및 면접고사<개정 '11.07.28>

3. 예.체능계열은 실기고사를 실시 할 수 있다.

4. <삭제 '00.7.10>

5. 필요에 따라서 필기시험, 논술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1.07.28>

③ 특별전형은 지원현황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정하되 선발방법, 기준, 대상자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개정 '95.5.20. '98.1.12. '99.6. 15, '18.02.12>

④ <삭제 '99.6.15>

제6조의2(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조신설 '17.01.0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전형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7조(외국인학생의 범위와 정원)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1.2.1, '01.12.7>

② 제1항의 입학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15.12.29, '25.12.19>

제8조(외국인학생 선발절차)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자의 입학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되 제6조 제2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9.6.15, '15.12.29, '25.12.19>

제9조(외국인학생 입학시험) 외국인 지원자에게는 본 대학원의 전공과목 이수에 필요한 어학능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6.15>

제10조(편입학) ① 각 학위과정의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안에서 타 대학원 학생에게 소정의 전형을 거쳐 당해(동종계통 포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99.6.15,

개정 '14.01.02>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99.6.15>

제11조(지원절차)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0, '98.2.4, '12.08.27>

② 제1항에 따라서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항신설 '12.08.27><개정 '15.12.29>

제3장 수업과 수료

제12조(수업년한)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각각 2년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개정 '01.12.7, '12.08.27, '18.02.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년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신설 '18.02.12, 개정 '22.02.25>

③ <항신설 '18.02.12, 삭제 '19.07.04.>

제13조(재학년한) ① 재학년한은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01.12.7, 개정 '12.08.27>

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포함하며, 편입학자는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항신설 '12.08.27>

<조목개정 '12.08.27>

제14조(수업일수) 각 학위과정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09.08.25>

제15조(교과과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95.5.20.>

제16조(교과과정 운영의 원칙) ①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2.08.27>

② 학과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과는 규정한 학기 내에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항신설 '12.08.27>

제17조(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운영)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이 해당 학과(부) 대학원 과정의 특정교과를 이수 하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부)장과 학과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시 6학점 범위 내에서 그 이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소요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5.20, '11.07.28, '15.12.29>

제18조(수강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수강과목은 교과과정에 따라서 개설하고 학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개정 '96.11.18, '15.12.29>

②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출신자가 동일학과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박사학위과정에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항신설 '21.04.30>

제19조(수업)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 및 전공별로 행한다.

② 수업은 주간 및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On-line을 통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집중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신설 '05.12.26, 개정 '11.07.28, '12.08.27, '18.02.12, '19.10.01>

③ 매학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항신설 '18.02.12>

제20조(학기당 수강학점) 매학기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나,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추가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5.5.20, '01.12.7, '12.08.27>

제21조(수료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57학점으로 한다.<개정 '11.07.28, '12.08.27, '18.02.12>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논문대체 신청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자 중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 <항신설 '18.02.12, 개정 '19.07.04.>

제22조(선수과목) ① 하위과정과 서로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 또는 동종학과 출신자로서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06.8.31, '11.07.28, '12.08.27, '12.12.24, '15.12.29>

② 각 과정의 하위과정부터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5.20>

- ③ 외국인 학생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어 과목을 추가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항신설 '18.02.12>
- ④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을 학위취득에 필요한 수료 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15.12.29, 항이동 '18.02.12>

제23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각 학위과정의 2학기 진급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변경을 할 수 없다.<신설 '95.5.20, 개정 '12.08.27, '15.12.29>

1. 학과 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에 재학중인 경우<신설 '12.08.27>
2. 일반과정에서 협동과정으로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신설 '12.08.27>
3. 일반과정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신설 '12.08.27>
4. 수업 및 학과운영상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신설 '12.08.27>

②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5.5.20, 개정 '12.12.24, '14.12.24>

1. 전공변경원
2. 주임교수 승인서
3. 기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제23조의2(전과)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과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19.10.01>

1. 대형 국가과제 수주를 위해 소속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보고서 등을 종합평가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단, 성적 백분율 값은 평점을 사용하여 (평점×10) + 55로 산출한다.<개정 '11.07.28><단서신설 '16.08.18>

실 점	등 급	평 점
95 ~ 100	A +	4.5
90 ~ 94	A 0	4.0
85 ~ 89	B +	3.5
80 ~ 84	B 0	3.0
75 ~ 79	C +	2.5
70 ~ 74	C 0	2.0
0 ~ 69	F	0.0

제25조(이수인정 평점) 학업성적의 평점이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6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및 제한) 타 대학원 학점인정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1(학습경험 학점인정 및 제한) 학습경험 학점인정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8.02.12>

제27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정규등록을 마치고 「학칙시행규칙」 제21조 및 25조를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각 학위과정 수료로 인정한다.<신설 '95.5.20, 개정 '03.2.10, '15.12.29, '25.12.19>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하며,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95.5.20, 개정 '15.05.29>

제28조(학위수여)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서 규정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14.01.02, '18.02.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 대체 심사를 통과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논문 대체 신청과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항신설 '18.02.12>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재입학

제29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각 학위과정 동안 등록금 납부 및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2.08.27>

② <삭제 '01.12.7>

③ 일단 납입된 등록금의 반환은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11.07.28, 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15.12.29>

④ <항신설 '04.2.23>, <삭제 '12.08.27>

⑤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04.2.23>

⑥ 대학원간 학점교류 때문에 등록하는 자는 교류협정서에 따라서 소정의 등록금 납부 및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06.2.23, 개정 '12.08.27, '15.12.29>

⑦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개시 이후에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시 휴학일과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등록금 반환기준일은 수업일수가 많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1.01.27>

제30조(휴학)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00.7.10, 개정 '12.08.27, '17.01.03, '22.02.25>

1.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및 복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호신설 '17.01.03>

2. 4주 이상 치료 및 요양을 하여야 하는 경우 <호신설 '17.01.03>

3.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 <호신설 '17.01.03, 개정 2024. 12. 20.>

4.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호신설 '17.01.03>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신설 '17.01.03>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 상황으로 선포된 경우 <호신설 '22.02.25>

② 각 학위과정 별 휴학기간은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의무복무를 위한 휴학기간,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휴학기간, 질병 및 요양을 위한 휴학기간,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 재난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98.1.12, '01.12.7, '12.08.27, '15.12.29, '17.01.03, '22.02.25>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 또는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19.02.11.>

④ 임신 또는 출산 휴학은 각각 자녀 1명에 대하여 2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자녀 1명에 대하여 4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항신설 '19.02.11, 개정 '22.02.25>

⑤ 제2항을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단서삭제 '12.08.27><개정 '15.12.29, 항이동 '19.02.11.>

⑥ 휴학기간 경과,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대상자 중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직권 휴학을 시킬 수 있다.<신설 '22.02.25>

제31조(복학 및 재입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 할 때 또는 제적당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 및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5. 20>

②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안에서 한 차례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01.12.7, '15.12.29>

③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 아래 한 차례만 한정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줄 수 있으며 논문제출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2.08.27, '15.12.29>

제32조(재입학 학점 인정)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신설 '99.6.15><개정 '15.12.29>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재학년한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개정 '01.12.7, '14.12.24>
6. <신설 '01.12.7>, <삭제 '14.12.24>
7. <신설 '01.12.7>, <삭제 '14.12.24>
8. 사망한 자<신설 '22.02.25>

제34조(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99.6.15>

제5장 학생의 지도 및 장학금

제35조(학생의 지도) 학생은 본 대학교「학칙」 및 「학칙시행규칙」과 본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특히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개정 '15.12.29, '25.12.19>

제36조(학생회) ① 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둔다.<신설 '99.6.15>

② 학생회 운영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신설 '99. 6.15>

제37조(징계) ① 학생이 본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개정 '15.12.29, '25.12.19>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38조(장학금) 장학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95.5.20>

제6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9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술 연구에 관한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학술, 교양 연구상 심오한 학식 혹은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학생을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경우 각 학과 주임교수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 대학원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시행한다.<개정 '11.07.28>

제40조(연구생) ① 학·석사학위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각 학위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다.<개정 '04.11.22>

② 연구생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를 행하며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42조(직제) ①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개정 '99.6.15>

② <삭제 '99.6.15>

제43조(주임 및 지도교수) ① 대학원장은 제42조의 교원중에서 각 학과마다 1인의 주임교수와 학생별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95.5.20, '15.12.29>

② 주임교수는 해당학과를 대표하며 학사 및 학생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업과 학술활동 및 논문(대체)지도를 담당한다.<개정 '11.07.28, '18.12.04>

③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99.6.15>

제44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 위원회를 둔다.<개정 '99.6.15>

②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96.11.18, '99.6.15, '15.12.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99.6.15><개정 '21.01.11>

제45조(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6.15>

1. 학과 정원 조정 및 입학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18.02.12>
3.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4. <삭제 '12.08.27>

5. 학위수여 및 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23.>
6.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호신설 '20.07.03>
10.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7.03>

제46조(의결방법)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47조(학과대학원위원회 설치) 각 학과는 학과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11.07.28>

제48조(학과대학원위원회의 구성) 학과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주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학과가 2개 이상일 때는 학과간에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9조(학과대학원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학과대학원위원회는 학과 주임교수 선임, 학생의 학점 이수과 논문(대체)지도, 실험실습비 운영 및 기타 중요 학사를 협의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1.07.28, '18.12.04>

제50조(지도교수의 제청)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학과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한다.<개정 '12.08.27>

제51조(준용규정) 본 대학원「학칙시행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15.12.29, '25.12.19>

제52조(내규)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5.12.29, '25.12.19>

부 칙(1967. 12. 15, 문교대1041-2193)

- ① 이 학칙은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69. 2. 4, 대학1010-126)

이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1. 28, 대학1041.3-238)

이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1. 8, 대학1010-51)

이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4. 11, 대학1041.3-9)

이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12. 31, 대학1040-881)

이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21, 대학1040-84)

이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22, 대학1040-108)

이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8. 31, 대학1010-1345)

이 학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 19, 대학1040-97)

이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2. 15, 대학1040-213)

이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2. 30, 대학1040-88)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2. 15, 대학1041.3-1621)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4, 대학1040-1148)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1. 25, 대학1041-1712)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1. 22, 대학1041-1148)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26, 대학1041.3-1081)
이 학칙은 198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0. 29, 대학1041-2398)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1. 27, 대학1041-2070)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1. 7, 대학25413-1568)
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1. 29, 대학25413-1548)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2. 23, 학무25210-368)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1. 9, 대학25413-1387)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 30, 대학25413-1184)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9. 2, 학무25210-1080)
이 학칙은 199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1. 16, 대학25413-1165)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7. 30, 대학25413-1383)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30, 학무81412-922)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학칙에 의한 재입학자는 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 칙(1995. 5. 20, 학무81412-694)
이 학칙은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18, 대행81413-2407)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 대학81423-408)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18, 학무81412-1845)
이 변경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29, 학무81412-2349)
이 변경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4, 학무81412-146)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0, 대학규정 제98-47호)
이 학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8)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5조 제3항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12. 2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연구과정 학점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999학년도 대학원 연구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범위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2000. 7. 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01)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속변경 및 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의 각호와 같이 변경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미술학과 한국화전공은 한국화과로, 서양화전공은 서양화과로, 조소전공은 조소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응용미술학과 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과로 공예전공은 공예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2001.03.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31)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문예창작학과 및 신문방송학과, 자연과학계열에 정보통계학과, 예체능계열에 국악과를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계열에 정보통계학과 및 한약학과, 예체능계열에 무용학과를 신설한다.

③(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석사학위과정 가정관리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가정복지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1.12.07)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0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7호는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2.25)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변경)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의 보건학과를 인문사회계열 보건행정학과로 변경한다.

③(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석사학위과정 보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보건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3.02.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8)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신설) 박사학위과정 예체능계열에 서예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04.01.14)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에 보건학과를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보건행정학과, 자연과학계열에 보건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04.02.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12)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불어불문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04.10.08)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신설 및 변경)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하고,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의 의상학과를 패션.뷰티디자인학과로 변경한다.

③(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석사학위과정 의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패션.뷰티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4.11.22)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각각 군사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05.1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2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 외 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정원 외로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한 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8.31)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분리 및 신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별표 1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2006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의 패션.뷰티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 전공은 패션디자인산업학과로, 뷰티디자인 전공은 뷰티디자인학과로 소속 변경한다.
2. 박사과정의 가정학과는 폐과하며, 가정복지전공은 가정복지학과로, 식품영양학 전공은 식품영양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박사과정의 의상학 전공은 본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패션디자인산업학과 또는 뷰티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2007.08.23)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속변경 및 경과조치) 2006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물리학과와 반도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의 변경신청서 접수후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07.12.04)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소속변경 및 경과조치) 2007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석.박사과정의 불교학과와 석사과정의 금속공예학과 및 박사과정의 조형미술학과 공예학전공 재적중인 학생은 본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한국문화학과와 석.박사과정의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로 학과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09. 5. 27)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신설 및 명칭변경)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정보관리학과와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정보관리학과를 신설하고,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가정복지정보학과를 가정아동복지학과로 박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가정복지정보학과를 가정아동복지학과로 명칭 변경한다.

③(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석.박사 학위과정 가정복지정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가정아동복지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9.08.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02)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1.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소방행정학과와 식품산업융복합학과는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7.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간호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는 201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8.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특수교육학과는 2013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24)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1항 별표 1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재적중인 학생은 2013년 3월 1일부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소속을 변경한다.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농화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 학위과정의 생물환경화학학과로 소속변경한다.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패션디자인산업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 학위과정의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로 소속변경한다.
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제어계측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 학위과정의 전자융합공학과로 소속변경한다.

③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6.03. 정부직제변경(교육부))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02)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입학과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적생은 산림환경조경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03.)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계열에 한국어문화학과, 자연과학 계열에 의과학과, 공학계열에 화학공학, 박사학위 과정 인문사회 계열에 신문방송학과, 자연과학 계열에 식품생명공학과와 의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자연과학계열에 식품생명공학과와 의과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18.02.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5조제2호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6조의1은 2019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2항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개정 '18.12.04>

부 칙(2018.12.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3조 및 제49조 개정에 따라,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시행규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시행규칙」도 이 학칙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02.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및 폐지)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의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공학계열의 전자재료공학과, 의학계열의 라이프케어융복합학과를 폐지하며, 공학계열에 양자컴퓨터공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 공학계열의 전자재료공학과와 의학계열의 라이프케어융복합학과를 폐지하고, 의학계열의 간호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19.07.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1항 관련 별표1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에 한하여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9.10.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에 작업치료학과, 박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에 작업치료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20.01.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계열의 정치외교학과와 정보관리학과, 석사학위과정 공학계열의 양자컴퓨터공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동일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입학당시의 학적을 보유한다.
2. 폐지된 학과에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유예기간 2년(2020~2021년)동안 입학당시의 학칙 및 교육과정을 유지한다.
3.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이 타 학과로 소속변경을 원할 경우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로 소속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 시 소속변경원을 제출해야한다 <조신설 '21.01.11>

부 칙(2020.07.03.)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1항 관련 별표1은 2020학년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신설 및 폐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의 미래인문융합학과, 공학계열의 기계화학융합 의공학과, 의학계열의 의생명과학과를 신설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의 의과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의과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동일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조신설 '21.01.11>

부 칙(2020.11.0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사회적경제학과를 자연과학계열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언어

치료학과를,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사회적경제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21.01.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9.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및 폐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예체능계열에 음악문화학과, 미술치료학과를 신설하고, 석사학위과정 예체능계열에 음악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동일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입학당시의 학적을 보유한다.
2. 음악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동일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악문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의 미래인문융합학과, 공학계열의 기계화학융합의공학과를 폐지한다.

부 칙(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예체능계열의 무용학과, 서예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1. 폐지된 무용학과에 재입학하는 학생은 유예기간 2년(2022~2023년)동안 입학당시의 학칙 및 교육과정을 유지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입학하는 학생이 타 학과로 소속변경을 원할 경우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로 소속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재입학 시 소속변경원을 제출해야한다.

부 칙(2023.0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은 202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원불교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를 각각 신설한다.

부 칙(2024.02.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상담학과를, 석사 학위과정 지능정보융합공학과를 각각 신설한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토목환경공학과를 건설환경공학과로 변경한다.

제4조(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토목환경공학과와 석사과정 재적생은
건설환경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5.04.0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0.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안전보건학과 및 교과교육학과를, 석사 학위과
정 글로벌한국문화융합학과를 각각 신설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학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4. 12. 20.>

대학원 계열별 학과 및 입학정원(제3조제1항 관련)

1. 석사학위과정(263명)

계 열	학 과
인문사회	불교학과, 한국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한문고전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일어일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신문방송학과, 보건행정학과, 군사학과, 소방행정학과, 특수교육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원불교학과, 상담학과, 글로벌한국문화융합학과, 교과교육학과
자연과학	#농학과, #원예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가정아동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약학과,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한약학과, 정보통계학과, 보건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간호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작업치료학과,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안전보건학과
공학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지능정보융합공학과
의학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국악학과, 음악문화학과, 미술치료학과

"#"표시는 산학연협동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2. 박사학위과정(209명)

계 열	학 과
인문사회	불교학과, 한국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찰행정학과, 유아교육학과, 회계학과, 한문고전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 군사학과, 소방행정학과, 고고·미술사학과, 특수교육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원불교학과, 상담학과, 교과교육학과
자연과학	#농학과, #원예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약학과, 가정아동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정보통계학과, #한약학과, 보건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안전보건학과
공학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도시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의학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조형미술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국악학과, 음악문화학과, 미술치료학과

"#"표시는 산학연협동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3. <삭제 '11.07.28>

4.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계 열	학 과
인문사회	경제학과, 교육학과, 문예창작학과, 불교학과, 유아교육학과, 한국문화학과, 경영학과, 한문고전학과, 철학과, 원불교학과, 상담학과, 교과교육학과
자연과학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약학과, 화학과, 가정아동복지학과, 한약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안전보건학과
공학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의학	한의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예체능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2-2-2. 대학원 입학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장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12.19>

제2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다. <개정 '25.12.19>

제3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전·후기로 실시하되 전기 모집시 입학정원을 충족할 경우 후기 모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구비서류) 각 학위과정별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개정 '12.08.27>
 - 가. 입학원서 1부
 - 나. 대학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1부
 - 다. 대학 전학년 평균 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라. 현역 군인은 소속지휘관의 취학승인서
 -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
 - 바. 국외 학사학위취득자는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 1부<개정 '99.6.15>
 - 사. 특별전형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각 1부
 - 아. <삭제 '06.8.31>
 - 자. 군위탁생은 육군참모총장의 취학승인서<신설 '06.2.23>
 - 차. 소정의 수험료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 1부
 - 나. 석사학위 취득 또는 예정증명서 1부
 - 다. 석사학위과정 평균 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라. 현역 군인은 소속지휘관의 취학승인서
 - 마. 특별전형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및 연구실적물 각 1부
 - 바. <삭제 '06.8.31>
 - 사.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
 - 아. 국외 석사학위취득자는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 1부<개정 '99.6.15>
 - 자. 군위탁생은 육군참모총장의 취학승인서<신설 '06.2.23>
 - 차. 소정의 수험료

제5조(일반전형시험과목 및 배점) 본 대학원의 입학시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학과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1.07.28>

1. 서류전형 : 이전 학위과정의 학업성적, 경력, 학술활동 및 봉사활동 등<개정 '06.8.31, '11.07.28>
2. <삭제 '06.8.31>
3. <삭제 '06.8.31>
4. <삭제 '06.8.31>
5. 필기시험, 논술고사, 구술시험 및 면접고사 :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수학능력, 학업적성, 지원동기,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A, B, C, D로 평가한다. 단, 'D'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D'판정의 경우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1.07.28>
6. 연구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로 전형한다.
7. 필기시험, 논술고사, 구술시험 및 면접고사, 연구과정 전형은 학과 주임교수 주관하에 행한다.<신설 '06.8.31, '11.07.28>
8. 대학원 위원회는 지원현황에 따라 전형을 간소화할 수 있다. <호 신설 '18.02.12>

제6조<삭제 '06.8.31>

제7조(특별전형) ① <삭제 '12.08.27>

②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석사학위를 받은 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3. 국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 교원으로써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99.6.15, '01.2. 1>
5. 군위탁생은 육군참모총장의 취학승인서를 받은 자<신설 '06.2.23>
6.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학과 특성에 따라 특수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자.<개정 '01.2.1>

제8조(산.학.연 협동과정) 산.학.연 협동과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특별전형 방법) ① 박사학위과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다.<개정 '12.08.27>

② 서류심사는 이 내규 제4조의 지원구비서류에 근거하여 제7조에 의하여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구술시험 및 면접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지원동기, 인성 및 가치관 등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12.08.27>

③ 특별전형은 각 학과별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및 면접시험의 실시 방법과 배점은 학과대학원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2.08.27>

제10조(모집계열 및 비율) 특별전형의 모집계열 및 학과의 모집비율은 매년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99.6.15>

제11조(합격사정 및 발표)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사정원칙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개정 '99.12.23>

제12조(외국인학생 전형) 외국인의 전형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00.7.10, '18.02.12, '25.12.19>

부 칙(1998. 11. 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1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3. 대학원 수업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광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학칙시행규칙」 제3장 수업과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12.29, '25.12.19>

제2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의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2.08.27>

1. 각 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전공과목, 학위논문지도로 구분한다.<개정 '01.12.7, '12.12.24>
2. 각 학위과정 재학중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해야 할 경우는 타 학과 교과목 담당 교원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01.12.7, '12.08.27, '18.02.12, '21.01.11, '22.02.25>
3. 모든 교과목의 학점수는 한 과목당 3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지도는 “Pass”, “Fail”로 한다.<단서 신설 '12.12.24><개정 '15.12.29>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및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호신설 '12.12.24><개정 '15.12.29>

제3조(교과과정의 변경) 제2조에 따라서 편성된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임교수는 교과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1.12.7, '15.12.29>

제4조(교과목의 개설) 주임교수는 교과과정에 의한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학사일정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수강생수) 교과목 개설은 수강신청결과 수강생이 최소 3인 이상인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인원 부족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4.12.24>

제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신청하고 그 신청서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2.29>
-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전공과목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개정 '01.12.7, '18.12.04>
-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전공과목 5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01.12.7, '12.08.27>
- ⑤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과목을 합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선수과목 이수학기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 '01.12.7, '05.1.13, '12.08.27>
- ⑥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01.12.7>
- ⑦ 본 대학원 석사학위 출신자가 동일학과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학수번호가 같거나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박사학위과정에서 중복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다.<항신설 '21.04.30>

제7조(수강신청 변경) 제6조에 따라서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변경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0.7.10, '15.12.29>

제8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5.12.29>

1. <삭제 '11.07.28>
2. 교내.외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교원<개정 '11.07.28>
3.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동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4.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개정 '11.07.28>

제9조(담당교과목 수의 제한)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담당하는 대학원의 교과목 수는 박사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학기당 2개 교과목, 석사과정만 설치된 학과는 1개 교과목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14.12.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강의전담 교원은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신

설 '12.12.24><개정 '14.12.24, '15.12.29.>

- ③ 교육의 질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학기 개설 과목 중 60%이상을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및 학문 단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2.02.25>

제10조(외래강사 요청) 교과과정 운영상 외래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4조의 수업시간표와 함께 강사제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전에 담당 교과목마다 수업계획서를 대학원 교학과에서 지정하는 교내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15.12.29.>

제12조(수업)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초에 수업계획서 입력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개정 '11.07.28>

- ② 수업은 학위과정별로 수강생의 학기 구분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학위과정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2.08.27>

제13조(학점인정 출석시간) ① 정당한 사유없이 한 학기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하며, 원격강의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에 의한 강의파일의 접속여부를 통하여 출결을 산정한다.<개정 '05.12.26, '15.12.29, '22.02.25>

- ②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신설 '22.02.25>

제14조(학점 인정)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군 입대, 질병, 출산, 임신, 육아,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휴학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1.07.28, '14.01.02, '22.02.25>

제15조(시험 및 성적 평가) ① <삭제 '11.07.28>

- ② 성적은 시험, 보고서, 출석, 수업참여태도, 발표능력, 학문적 발달 상태 등을 기준으로 교수가 평가기준과 배점을 정하여 부여하되, 그 근거를 수업계획서에 밝혀야 한다.<개정 '11.07.28>

- ③ 원격강의 개설과목의 시험방법은 통신매체에 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신설 '05.12.26>

제16조(출석부 및 성적단표 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말 정해진 기일 내에 해당 교과목의 출석부 및 성적단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2.12.24>

- ② 소정의 기간까지 출석부 및 성적단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개정 '12.12.24>

- ③ 출석부 및 성적단표 등 성적처리와 관련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신설 '22.02.25>

제17조(공결) ① 교과목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인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2.02.25>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감염 또는 감염의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 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아래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배우자	7일
	자녀	7일

구분	대 상	일수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대한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학생의 대회 출전 및 훈련 등의 공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교과목 수강생이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③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의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제18조(성적공개와 정정)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기말고사 후 지정 기간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본조신설 '22.02.25>

② 학생은 성적 공개 기간에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개 기간 중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정정할 수 있다.

1.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와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2.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3. 기타 착오 발생의 원인이 학생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이의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학생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학과대학 원위원회에서 제출된 성적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최종확정한다.

제19조(교원 직계가족의 수강 관리) ① 교과목 수강생 중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 교원은 당해 지정된 기간 내에 직계가족의 수강 사실을 신고 및 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2.02.25>

② 교과목 담당 교원이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 교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 및 징계할 수 있다.

부 칙(1998. 11. 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0. 7. 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1. 13)

이 시행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12. 26)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02)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 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1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제2호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04)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1)
이 시행규칙은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04. 30)
이 시행규칙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2. 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4.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제정 1999. 06. 15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10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12.19>

제2조(지원자격)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 지원 자격은 당해(동종계통 포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한하고 편입학 학기에 따라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01.12.7, '05.8.9, '12.08.27>

학 위 과 정	편입학기	지 원 자 격	
		정규등록 학기수	인 정 학 점
석 사 과 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박 사 과 정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제3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은「대학원 입학에 관한 내규」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5.12.19>

제4조(전형시기) 편입학전형은 년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신입학 전형시기와 같다.<개정 '12.08.27>

제5조(학점인정) ① 편입생이 편입전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입학 전에 해당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01.12.7, '06.2.23, 2023. 7. 14.>

② 전항의 학점인정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전적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 후 편입한 경우에는 동일및 유사과목에 관계없이 전항의 최대 학점을 인정한다.<항신설 '12.08.27>

제6조(수업년한과 학점이수년한)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학점이수년한은 본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7조(외국어 및 종합시험) 편입학생이 편입전 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에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7)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02학번을 부여받는 편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의 학번을 부여 받는 편입학생은 종전의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2005. 8. 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12)

이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7. 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대상으로 본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5.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광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학칙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학위 과정의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08.27, '15.12.29, '25.12.19>

제2조(학위구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로 구분한다.

제3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별은 전공학과에 따라 별표 1과 같다.<개정 '01.10.31, '02.2.25, '03.10.28, '04.1.14, '04.7.12, '04.10.8, '04.11.22, '07.8.23, '07.12.4, '09.5.27, '10.09.02, '11.01.27, '11.07.28, '12.08.27, '12.12.24, '14.01.02, '14.06.02, '14.12.24, '15.12.29, '16.08.18, '17.01.03, '18.01.03, '19.02.11, '19.10.01, '19.11.19, '20.07.03, '20.11.05, '21.04.30, '21.09.01, '21.11.17, '22.07.20, '23.12.22.>

제4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초(편.재입학생은 편.재입학 학기 초),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5학기 초에 지도교수 지도하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2.08.27, '15.12.29>

제5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중간발표 이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된 날로부터 각 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경과되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00.7.10, '12.08.27>

제6조(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과정

가. 4학기이상(학.석사연계과정 수업년간 단축자의 경우 3학기)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논문 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개정 '18.12.04, '20.02.06, 2023. 12. 22., 2024. 8. 23., 2024. 12. 20., 2025. 6. 27.>

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12.08.27>

다.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개정 '12.08.27>

라.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개정 '12.08.27>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개정 '15.06.04, 2023. 12. 22., 2024. 8. 23., 2024. 12. 20., 2025. 6. 27.>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36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개정 '01.12.7, '12.08.27>

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12.08.27>

다.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신설 '12.08.27>

라.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단서신설 '03.2.10, 개정 '12.08.27>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개정 '15.06.04>

바. 입학후 100%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08.5.27>

(1) SCI급 학술지 : 5인 이내 공동연구 100%, 6인이상 공동연구 70%

(2)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연구 50%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5%

3. 석.박사 통합과정<호신설 '12.08.27>

가. 8학기 이상(수업년간 단축자의 경우 7학기)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57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24. 8. 23.>

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라. 1학기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개정 '15.06.04>

바. 입학 후 100%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SCI급 학술지 : 5인 이내 공동연구 100%, 6인이상 공동연구 70%

(2)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연구 50%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5%

제7조(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①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학과 교수 및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자의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② 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한다.

제8조(중간발표시기) ① 중간발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까지 발표하여야 하며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개정 '05.8.9, '15.12.29>

② 중간발표가 부결될 경우에는 재발표하여야 한다.<개정 '05.8.9>

제9조(중간발표결과) ① 학과주임교수는 발표결과를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07.28>

② 학위청구 논문은 그 제목과 내용에 있어서 중간발표 결과보고서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신설 '00.7.10>

제10조(학위청구논문의 성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가 지정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학위청구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바탕되어야 하며,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어야 하고 이론은 분명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 학위청구논문 : 다루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에 충실하여야 하고 학술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기존지식이나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는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5월과 10월중으로 하며 2회에 한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은 본 대학원이 정하는 심사절차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목 개정 '12.08.27>

1. 학위청구논문심사요구서 1부<개정 '12.08.27>

2.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용) : 석사 3부, 박사 5부<개정 '12.08.27, '22.02.25><호이동 '15.12.29>

4. <호이동 '15.12.29><삭제 '19.10.01>

5.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일까지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한함)<개정 '12.08.27, '22.02.25><호이동 '15.12.29>

6.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신설 '12.08.27><호이동 '15.12.29>

7. 논문표절(유사도)검사 결과 확인서 1부<개정 '15.12.29, '22.02.25>

제12조의 2(연구윤리 준수) ①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12.08.27><개정 '15.12.29, '20.07.03>

② 모든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항신설 '20.07.03>

③ 연구윤리교육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대학원의 지침에 따른다.<항신설 '20.07.03>

제12조의3(논문 유사도검사 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논문심사 전 및 최종 논문 제출시 대학원에서 정하는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의 논문 표절(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본조신설 '22.02.25 >

제12조의4(학위수여 예정증명)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3.]

제13조(학위청구논문 작성용어)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및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4.01.02>

제14조(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작성제출) 학위청구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용 논문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과주임교수를 경유,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07.28>

제15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심의) 제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준한다.<개정 '01.12.7>

제16조(심사위원 선정) ①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교내·외의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교수, 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또는 교내 특수신분교수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논문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정하여 추천하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2.08.27, '14.01.02, 2025. 6. 27.>

② 대학원장은 승인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을 시행하게 한다.<개정 '12.08.27>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인 경우 3인, 박사학위인 경우 5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 최대 3인까지 외부인사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99.12.23, '11.07.28, '12.08.27>

④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공동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1.07.28, '12.08.27>

제17조(심사위원장의 임무)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의 권한은 여타 위원과 동등하다.<개정 '11.07.28>

제18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가 개시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한 후 교체할 수 있다.<개정 '12.08.2, '15.12.29>

제19조(논문심사 방법)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 결의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으나, 필히 1회 이상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기간) ① 논문심사는 논문심사 개시 후 대학원 학사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2.08.27>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논문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학기 연장할 수 있다.<신설 '12.08.27, '14.01.02, '15.12.29>

제21조(학위논문 예비심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2.08.27, '22.02.25>

1. 논문의 독창성 여부
2.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이나 연구방법의 합리성, 연구성과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심사
3.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의 제청에 따라 지도교수가 지도하여야 한다.

제22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판정) ① 각 심사위원의 평가는 "가", "부"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4인 이상의 "가" 판정을 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개정 '11.07.28, '12.12.24>

② 논문이 부실하여 "부" 판정 받았을 경우 논문심사를 1학기 이상 유예한다.

제23조(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후 각 학위과정 공히 심사 일정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대학교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2.08.27, '15.12.29>

② 본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내용과 체제상의 종합적인 타당성을 가려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요지와 아울러 의결내용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④ 본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3회 이상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는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개정 '12.08.27>

제24조(학위청구논문 합격판정) 학위청구논문의 심사평가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 학위청구논문의 경우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가"로 평가하면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개정 '12.08.27, '15.12.29>

<조목개정 '12.08.27>

제25조(구술시험) ①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학위청구논문에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 ②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 박사 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개정 '12.12.24>

제26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2.08.27>

<조목개정 '12.08.27>

제27조(학위수여의 의결보고)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심사에 통과된 학위청구논문에 한하여 대학원 교학과의 확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체제에관한내규」 제5조에 따른 인쇄본 및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원문매체를 중앙도서관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07.28, '15.12.29, '22.02.25>

제29조(학위기 수여) 석·박사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논문대체를 통한 석사학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01.3.2, '12.08.27, '15.12.29, '19.10.01, 단서신설 '19.11.19>

제29조의 2(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2.08.27, 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15.12.29>

제30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 받을 절차를 취하고 있는 자로서 그 명예를 심히 손상할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한다.<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개정 '19.10.01>

제31조(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 우리나라 문화와 학술에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또는 본 대학교 발전 및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15.12.29>

제32조(명예박사학위 종별)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별표 1에 의한 박사학위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33조(추천절차 및 서류) 명예박사학위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6.15>

1. 추천서
2. 이력서
3. 공적조서
4.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5. 사진 3매(5cm × 6cm)

제34조(심의 및 승인) 명예박사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총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01.3.2, '12.08.27, '15.12.29>

제35조(명예박사학위 수여시기) 명예박사학위는 정규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1998. 11. 20)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31)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01. 12. 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가목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2. 25)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03. 2. 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8)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당시의 학위명으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04. 1. 14)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2)
이 시행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8)
이 시행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2)
이 시행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31)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06년 8월 학위수여자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23)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04)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2008.05.27)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2009.05.27)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10.09.02)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1.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소방행정학과와 식품산업융복합학과는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7.28)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은 201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 학위종별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12.08.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별표 1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3. 정부직제변경(교육부))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02)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0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15.06.0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이 시행규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23)

이 시행규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1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0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이 시행규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11)

이 시행규칙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06)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03)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20.11.05)

이 시행규칙은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3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단,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농학과의 석사 및 박사의 학위명은 2022학년도 2학기 신입학 학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조신설 '22.10.18>

부 칙(2023.12.2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3.)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관련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한 신청자에 한해서 소급 적용한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5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 별표1 학위종별 공학석사 수여학과 중 토목환경공학학과를 건설환경공학과로 변경한다.

부 칙(2025.06.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0.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별표 1】대학원 학위종별(제3조 관련) <개정 2024. 12. 20.>

1. 석사학위

학위종별	학과	학위종별	학과
문학석사	불교학과, 한국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한문고전학과 교육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일어일문학과, 문예창작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원불교학과, 글로벌한국문화융합학과	치의학석사	치의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한의학석사	한의학과
경찰학석사	경찰행정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과
<삭제 '21.04.30>	<삭제 '21.04.30>	귀금속디자인학석사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회계학과	음악학석사	<삭제 '21.09.01> 음악문화학과
무역학석사	무역학과	국악학석사	국악학과
이학석사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정보통계학과,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안전보건학과	언론학석사	신문방송학과
농학석사	원예학과	서예학석사	서예학과
가정아동학석사	가정아동복지학과	보건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행정학석사	보건행정학과	군사학석사	군사학과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지능정보융합공학과	미용학석사	뷰티디자인학과
약학석사	약학과	교육학석사	유아교육학과
한약학석사	한약학과	<삭제 '21.04.30>	<삭제 '21.04.30>
의학석사	의학과	소방학석사	소방행정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특수교육학석사	특수교육학과
작업치료학석사	작업치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적경제학과
언어병리학석사	언어치료학과	동물매개심리치료학석사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학석사 <신설 '21.09.01>	미술치료학과<신설 '21.09.01>	반려동물학석사<신설 '22.07.20>	농학과<신설 '22.07.20>,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23.12.22>
산림조경학석사 <신설 '22.07.20>	산림환경조경학과<신설 '22.07.20>	상담학석사	상담학과
교과교육학석사	교과교육학과		

2. 박사학위

학위종별	학과	학위종별	학과
철학박사	불교학과, 철학과, 원불교학과<신설 '23.12.22>	한의학박사	한의학과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한문고전학과, 일어일문학과, 문예창작학과, 한국문화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과
교육학박사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한약학박사	한약학과
법학박사	법학과	무용학박사	무용학과
경찰학박사	경찰행정학과	귀금속디자인학박사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서예학박사	서예학과
<삭제 '21.04.30>	<삭제 '21.04.30>	보건행정학박사	보건행정학과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회계학과	군사학박사	군사학과
무역학박사	무역학과		
언론학박사	신문방송학과		
이학박사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정보통계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안전보건학과	미용학박사	뷰티디자인학과
농학박사	원예학과	<삭제 '21.04.30>	<삭제 '21.04.30>
가정 아동 학박사	가정아동복지학과	국악학박사	국악학과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도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소방학박사	소방행정학과
약학박사	약학과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과
의학박사	의학과	체육학박사	체육학과 <신설 '14.12.24>
조형 미술 학박사	조형미술학과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치의학박사	치의학과	작업치료학박사	작업치료학과
사회학박사	사회적경제학과	음악학박사	음악문화학과
미술 치료 학박사 <신설 '21.09.01>	미술치료학과<신설 '21.09.01>	반려 동물 학박사 <신설 '22.07.20>	농학과<신설 '22.07.20>,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23.12.22>
상담학박사	상담학과		
교과 교육 학박사	교과교육학과		

【별지 제1호 서식】

1. 석·박사 학위증서(국문)

석(박) 제	호	학 위 기		
		0	0	0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그 심사에 통과하여 00학 석(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0 0 박사 0 0 0				
위의 인정에 의하여 00학 석(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원광대학교 총 장 0 0 박사 0 0 0				
학위번호 : 원광대 2000 석(박) 0000				

2. 석·박사 학위증서(영문)

Wonkwang University	
Upon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0 0 0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The Degree of 0 0 0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on Month day, Year	
0 0 <u>0</u> DEAN OF THE GRADUATE SCHOOL	0 0 0 <u> </u>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2호 서식】

명박제 호

학 위 기

본 적(국적)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은 _____ 공헌을 하였으므로 명예 〇〇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〇 〇 박사 〇 〇 〇

위의 인정에 의하여 〇〇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원광대학교 총 장 〇 〇 박사 〇 〇 〇

【별지 제3호 서식】

1. 석사논문대체자의 학위증서(국문)

석 제	호			
학 위 기 0 0 0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하여 00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0 0 박사 0 0 0				
위의 인정에 의하여 00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원광대학교 총 장 0 0 박사 0 0 0 학위번호 : 원광대 2000 석 00000				

2. 석사논문대체자의 학위증서(영문)

Wonkwang University	
Upon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0 0 0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The Degree of 0 0 0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on Month day, Year	
0 0 0 DEAN OF THE GRADUATE SCHOOL	0 0 0 PRESIDENT OF THE UNIVERSITY

2-2-6. 대학원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 및 전과, 휴학, 복학,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01, '25.12.19>

제2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 학점등록, 연구등록, 논문등록으로 구분한다.<개정 '12.08.27, '12.12.24>

②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료 후에는 연구등록 및 논문등록을 하여 재학 생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받은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구비 및 논문지도와 논문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항신설 및 제목개정 '14.12.24>

제3조(정규등록) 정규등록이란 수업년간 동안에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4조(학점등록) 학점등록이란 수업년간 동안 정규등록을 마친자가 졸업에 필요한 수료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개정 '01.12.7,조목및본문개정 '12.08.27, 개정 '12.12.24>

② <삭제 '04.2.23>

제5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란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수료연구생)이 하는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자의 논문제출 기간은 등록한 후 1년 이내로 한다.<개정 '04.1.14, '12.08.27, '12.12.24, '14.01.02>

제5조의 2(논문등록) 논문등록이란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된 자(영구수료생)가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기 위한 등록을 말하며, 논문등록자의 논문제출 기간은 등록한 후 1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12.08.27, 개정 '12.12.24, '14.01.02>

제6조(등록금) 각종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9.9>

1. 정규등록 : 당해학기 입학금(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에 한함)과 수업료<개정 '12.08.27>
2. 학점등록<개정 '12.08.27>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3. 연구등록 : 당해학기 수업료의 10%<개정 '01.12.7, '12.08.27>
4. 논문등록 : 당해학기 수업료의 20%<신설 '12.08.27>

제7조(휴학사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 휴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7.01.03>

1. 치료 및 요양의 경우 :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사실 확인원 등 관련 증빙서류 <개정 '17.01.03>
2. 군 입대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개정 '14.01.02>
3. 임신 및 출산의 경우 : 임신 및 출산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개정 '17.01.03>
4. 육아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호신설 '17.01.03>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호신설 '17.01.03>
6. 재난 상황으로 인한 휴학 : 관련 증빙서류<호신설 '22.02.25>

제8조(휴학원 제출시기)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마친 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초 4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 대학원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4.2.23, '19.02.11.>

제9조(휴학기간 및 연장) ① 휴학기간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12.08.27>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는 복학 예정학기의 등록기간 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학시기) ①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복학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로 1년 이상 복무 중인 자는 군무기관 장의 취학승인서와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신설 '22.02.25>

제11조(복학자 등록) 정규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05.12.26>

제12조(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개정 '99.9.9, '12.08.27>

제13조(재입학시기) 재입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이전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재입학자 학점 인정 및 등록) 재입학자는 제적 이전의 등록 및 취득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등록금 이외에 입학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학자의 재학년한)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제적 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으로 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16조(전과의 목적) 원광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같은 학기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조신설 '19.10.01>

제17조(전과의 범위) 전과는 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학과로 1회만 가능하다.<조신설 '19.10.01>

제18조(전과의 시기) 전과는 학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조신설 '19.10.01>

제19조(전과의 학점인정)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조신설 '19.10.01>

제20조(전과의 시험인정) 전적 학과에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을 통과했을 경우, 전과한 학과의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 '19.10.01>

제21조(전과생의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변경 될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제8조제3항에 따라 전과 이후 1학기 이상 전과한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조신설 '19.10.01>

제22조(전과원서 제출)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진급 전 서류 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신설 '19.10.01>

1. 전과원서(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3. 전공학점 인정서(소정양식)

제23조(전과의 허가) 전과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조신설 '19.10.01>

제24조(전과생의 등록금) 계열변경에 따라 등록금이 변경 될 경우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조신설 '19.10.01>

부 칙(1998. 11. 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9)

이 시행규칙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 14)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구등록) 석.박사학위과정의 연구등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이 규칙 제5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2.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이 개정규칙 제5조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4. 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6)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금차액 미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이 개정규칙에 의하여 등록금의 차액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제3호의 석사과정 연구등록은 2013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02)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1. 0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7. 타 대학원 학점인정 및 제한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의 학점 인정 및 제한에 관하여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6.15, '25.12.19>

제2조(학점인정 대상 대학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 일반대학원 및 국외대학원과 학군제휴에 참여한 대학원 및 국방대학교 대학원으로 한다.<개정 '01.6.30, '06.2.23, '12.08.27>

제3조(학점 인정)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이 재학기간에 한하여 제2조의 국내 일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3학점, 통산 12학점까지 인정한다.<개정 '01.6.30, '06.2.23, '12.08.27>

② 본 대학원 재학생이 재학기간에 한하여 제2조의 국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9학점, 통산 18학점까지 인정하며, 학점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01.6.30, 개정 '06.2.23, '11.07.28>

③ 학술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에 파견된 기간에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01.6.30>

④ 군위탁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한하여 근무지 변동시 제2조의 학군제휴에 참여한 대학원 및 국방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며, 교류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신설 '06.2.23, 개정 '12.08.27>

⑤ 군위탁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 군내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06.2.23, 개정 '12.08.27>

제4조(수강신청)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등록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성적 정리) 본 대학원 학생이 국내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과목의 성적은 취득성적이 A.B.C 일 경우에 각각 A.B.C로 정리하고 취득성적이 D 이하일 경우에는 F로 처리한다.

제6조(성적표 제출)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성적표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직제변경 '15.06.04>

제7조(수업연한 및 학점이수연한) 이 내규에 의하여 학점인정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연한 및 학점이수연한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5.12.19>

부 칙(1998. 11. 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3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8. 대학원 선수과목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2조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6.15, '25.12.19>

제2조(선수과목의 이수대상자) 각 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2.08.27, 조제목개정 '12.12.24, '18.02.12>

1. 학사학위과정과 상이한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과에 입학한 자.<개정 '12.12.24>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모두 상이한 박사학위과정 학과에 입학한 자. <삭제 '06.8.31, 호신설 '12.12.24>
3. 동종 학과 출신자로서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4.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어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호신설 '18.02.12>

제3조(선수과목의 결정)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시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선수과목 및 학점을 지정한 선수과목 이수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2.12.24>

제4조(선수과목 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에서 선수과목 이수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되,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선수과목 이수는 한국어 교과목 중에서 추가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03.10.28, '12.08.27, '18.02.12, '18.12.04, '21.01.11>

② <삭제 '02.2.25>

제5조(선수과목 이수 인정) 선수과목 이수계획서에 의한 선수과목 중에 학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교과목은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4.01.02>

제6조(선수과목 수강신청) ①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C°(70점)미만인 경우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12.08.27>

제7조(이수학점 처리) 선수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부 칙(1998. 11. 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개정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2003. 10. 28)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8. 3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02)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12)

이 시행규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04)

이 시행규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01. 11)

이 시행규칙은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9.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8조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12.19>

제2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석.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 한다.<개정 '12.08.27>

제3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한다. <개정 '19.07.04.>

1. <삭제 '19.07.04.>
2. <개정 '01.12.07, 삭제 '19.07.04.>
3. <신설 '12.08.27, 삭제 '19.07.04.>

제4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학사일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형료)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6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험방법) ① 영어시험은 지정한 교재에서 전공에 관한 독해력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99.06.15, '99.09.09, '01.02.01, '05.01.13>

- ② 영어시험 점수배정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개정 '05.01.13>
- ③ <삭제 '01.12.07>
- ④ 영어시험은 주임교수 주관 하에 학과별로 실시한다.<신설 '05.01.13>

제8조(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시험출제 및 채점위원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1.07.28>

제9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12.08.27>

제10조(과목별 합격) <삭제 '01.12.07>

제10조의2(외국어시험 면제)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외국어시험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조신설 '01.12.07, 개정 '11.07.28, '19.07.04.>

1. TOEFL CBT 170점 이상인 자
2. TOEIC 700점 이상인 자
3. TOEFL IBT 79점 이상인 자 <호이동 25.06.27>
4. TOPIK 3급 이상인 자(외국인 학생에 한함) <신설 '11.07.28, 호이동 25.06.27>
5. 전적 대학원에서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 <신설 '12.08.27, 호이동 25.06.27>
6. 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신설 '12.08.27, 호이동 25.06.27>
7. IELTS 5.5등급 이상인 자 <신설 '19.07.04., 호이동 25.06.27>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학생은 전항을 적용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19.07.04.>

③ 또한 외국인 학생은 각 과정 별 입학 후 원광대학교 공식 어학 관련 기관에서 2개 학기(학기기준은 한국어교육기관의 4학기제에 따름) 이상 수료할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7.]

제11조(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개정 '99.6.15, '99.9.9, '12.08.27, 삭제 '19.07.04.>

제12조(종합시험 응시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한 자.<개정 '18.12.04, '20.07.03, '22.02.25>
 - 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이고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개정 '11.07.28, '12.08.27, '18.12.04>
2. 박사학위과정
 - 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개정 '01.12.07, '22.02.25>
 - 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36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이고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점 이상인 자.<개정 '11.07.28, '12.08.27>

3. 석·박사통합과정<신설 '12.08.27>

가.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개정 '18.12.04, 2024. 8. 23.>

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이고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

제13조(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중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을 시험한다.<개정 '03.02.10, '12.08.27>

제14조(응시추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형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1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2.12.24>

제17조(시험방법)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주임교수 주관 하에 학과별로 실시한다.

제18조(시험위원)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로서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출제위원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12.08.27>

제20조(과목별 합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개정 '10.09.02>

제21조(합격인준) 외국어시험 결과는 제9조, 종합시험 결과는 제19조를 적용 시행한다.<개정 '00.07.10, '12.08.27>

부 칙(1998.11.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06.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9)

이 시행규칙은 199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01학년도 2학기부터, 제7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 한다.

부 칙(2001.12.0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가목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2.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1.1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0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2 본문은 201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8.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0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0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10.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43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6.15, '25.12.19>

제2조(주임교수 자격 및 임기) ① 대학원 학과주임교수는 해당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06.8.31>

② 주임교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12.24, 2023. 7. 14.>

③ 주임교수는 정년까지 최소 2학기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주임교수 위촉의 예외를 둘 수 있다. <항신설 '22.07.20>

제3조(주임교수 선정) 주임교수는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선임과정을 거쳐 대학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1.07.28>

제4조(직무)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 설정 및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의 관장
2. 지도교수 추천
3. 외국어시험 문제출제 및 채점교수 선정<개정 '11.07.28>
4. 종합시험 응시자 추천 및 종합시험 관리<개정 '11.07.28>
5. 실험실습비 및 학술행사지원비 신청 관리
6. 논문심사위원 추천
7. 학과대학원위원회 소집 및 주재
8. 선수과목의 운영
9. 기타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제5조(지도교수 자격) ① 지도교수 자격은 소속학과 또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12.08.27, '19.10.01, '22.02.25>

1. <개정 '11.07.28> <삭제 '19.10.01>
2. <개정 '12.08.27> <삭제 '19.10.01>
3. <개정 '11.07.28> <삭제 '19.10.01>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정년까지 최소 3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정년까지 최소 7학기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항신설 '19.10.01><단서삭제 '20.09.02>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동일 전공의 정년 3학기 이상 남은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동일 전공의 정년 7학기 이상 남은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며, 해당 교원의 정년 퇴임 시 공동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항신설 '12.08.27><개정 '19.10.01, '20.09.02>

④ <항신설 '12.08.27><항삭제 '20.07.03>

제6조(지도교수 배정시기) 지도교수는 석·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말 이전(편.재입학생은 편.재입학 학기 초)에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배정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1.07.28, '12.08.27> <단서신설 '19.10.01>

제7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학위청구논문 및 연구, 실험 등을 지도한다.

제8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위촉된 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주임교수 승인 아래 신.구 지도교수의 합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② 학생이 변경을 원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이상 타당성을 인정하면 지도교수를 변경 할 수 있다.<항신설 '12.08.27>

③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각 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변경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가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2.08.27>

제9조(학위청구논문 지도편수) 삭제 <2025. 8. 29.>

제10조(학위청구논문 지도비)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석사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 정한 졸업시험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2.07.20> <개정 '25.12.19>

부 칙(1998. 11. 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01)

이 시행규칙은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07. 03)

이 시행규칙은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09. 02)

이 시행규칙은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2. 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7. 2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7. 1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8. 2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11. 장학금 및 학술행사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장학금 및 학술행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6.15, '12.08.27, '25.12.19>

제2조(장학위원회) 본 대학원의 장학금의 기본정책 및 장학금의 조성·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에 명시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삭제 '01.12.7, 신설 '07.12.4, 개정 '12.08.27>

제3조(장학금종류 및 지급대상) ①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은 본 대학원 신입생 및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01.12.7, '07.12.4, '12.08.27, '19.07.04.>

② 장학금 종류별 금액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항신설 '12.08.27>

③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학생성공처장에게 통보한다.<항신설 '12.08.27><직제변경 '22.02.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항신설 '21.01.11, 개정 '21.02.26>

1. 교내장학금

가. 교육보조장학금 : 각 학위과정 재학생중에 강의,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자<개정 '12.08.27, '14.01.02>

나. <삭제 '18.02.12>

다. 공로장학금 : 대학원 학생회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건학이념 구현에 적극적인 자 또는 학교위상 선양의 공로가 인정된 자로서 학과대학원위원회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07.12.4, '12.08.27, '14.01.02>

라. 학술공로 및 우수논문장학금 : 본교 "교비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학술지 1편 이상을 게재하고 신청한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신설 '02.7.5, 개정 '07.12.4, '12.08.27, '18.02.12>

마. <삭제 '18.02.12>

바.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개정 '99.6.15, '07.12.4, '12.08.27, '16.05.26, '18.02.12>

사. <신설 '99.12.23, 개정 '07.12.4, '12.08.27, '14.01.02, '18.02.12, 삭제 '19.07.04.>

아. 전일제연구장학금 : 대학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교수의 연구·교육을 보조한 자로서 지도(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 '00.7.10, 개정 '07.12.4, '12.08.27, '14.01.02, '18.02.12>

자. 교직원장학금 : 본교에서 3년이상 근무한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자녀와 학교법인원광학원 임.직원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자녀로서 총장(이사장)의 추천 및 승인을 받아 신청한 자(단, 재직 전임교원은 거, 너, 러목에 따른다)<신설 '05.12.26, '07.12.4, '12.08.27, '19.10.01, 개정 2024. 2. 23.>

차. 교역자장학금 : 원불교 종사자중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로서 원불교 중앙총부의 추천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한 자<신설 '05.12.26, 개정 '12.08.27>

카. 호국장학금 : 국방부 소속 군관계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신설 '06.2.23, 개정 '12.08.27, '19.10.01>

타. 산학관연협동장학금 :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신설 '07.12.4, 개정 '12.08.27, '18.02.12, '19.11.19, '20.01.10, '21.01.11, '22.02.25>

파. 특별장학금 :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07.12.4, 개정 '12.08.27, '14.01.02>

하. <삭제 '18.02.12>

거. 봉황1종장학금 :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신설 '18.12.04>

너. 봉황2종장학금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 및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자<신설 '18.12.04><개정 '21.01.11, '21.09.01>

더. <신설 '18.12.04, 개정 '19.07.04., 삭제 '21.09.01>

러. 봉황4종장학금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 부속 각 병원 소속 재직

자<목신설 '21.01.11><개정 '24.02.23>

머. 학·연·산장학금 : 대학원 지정 학·연·산의 협약기관의 종사자로서 학·연·산 협동과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신설 '18.12.04, 개정 '19.07.04, '19.11.19>

2. 교외장학금<개정 '07.12.4, '21.01.11>

가. 장학단체

나. 국가기관 및 그 산하 단체

다. 일반기업체

라. 기타 각종 기관 및 개인<개정 '12.08.27>

⑤ 각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지침에 따른다.<신설 '22.02.25>

제4조(장학생 선정시기) 장학생 선정시기는 매 학기 초에 선정한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12.08.27>

제5조(이중수혜 금지) ①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단, 공로장학금(1종), 학술공로 및 우수논문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특별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07.12.4, '14.01.02, '18.12.04>

② 교내장학금은 1인이 2종 이상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이중으로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항신설 '14.01.02>

제6조(절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중 장학종별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학과(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5.12.26, '07.12.4>

1. 성적증명서 1부

2. 추천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신설 '05.12.26>

4. 주민등록등본 1부 <신설 '05.12.26>

5. 기타 증빙서류

제7조(장학금 지급) ① 교내·외의 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삭제 '07.12.7>

2. 장학금은 매 학기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학기 단위로 지급한다.

4. <삭제 '19.11.19>

② 각종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19.11.19>

1. 교내장학금: 학술공로 및 우수논문장학금

2. 교외장학금: 외부기관의 지급기준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된 장학금

제8조(장학금 지급중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07.12.4>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된 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자

제9조(학술행사 지원) 대학원 학과 학술활동에 있어 주요학술행사 및 외래강사 초청강연에 소정의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도모한다.<개정 '11.07.28>

제10조(학술행사 선정) ① 학과에서 제출한 학술행사계획서에 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학원장이 선정한다.<개정 '11.07.28, '12.08.27>

② 제출된 학술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개정 '11.07.28, '12.08.27>

부 칙(1998. 11. 20)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6)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 및 교역자장학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이전에 2005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환불한다.

부 칙(2006. 2. 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4)

이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0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5. 26)

① 이 시행규칙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시행한다.

② 이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제3조제3항제1호하목의 한국어능력(TOPIK)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2018. 02. 12)

이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04)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제1호거목 내지 러목의 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제7조제1항제4호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07. 0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1. 1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는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02. 26)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9. 01)

이 시행규칙은 2022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2. 25)

이 시행규칙은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02. 23)

이 시행규칙은 202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12.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관한 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2. 02. 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수여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작성)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700자 원고지 또는 Word Processor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4.01.02>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및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6>

제3조(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이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3부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5부<개정 '12.08.27>

제4조(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심사용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우 심사위원장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작성 제출한다.<개정 '11.07.28>

제5조(학위논문 제출부수) 학위논문심사 통과자는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0.7.10>

1. <삭제 '11.07.28>
2. 중앙도서관 운영관리과 : 각 학위과정은 공히 책자화된 논문 3부(법학과 5부) 및 도서관에서 정하는 원문매체 <개정 '11.07.28, '12.08.27, '20.02.06, '22.02.25 직제변경 '15.06.04.>

제6조(학위논문심사위원 서명날인)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심사위원 전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0.7.10, '22.02.25>

제7조(학위논문 체계 및 구비사항) 학위논문이 체계는 각 학과의 학문적 성격과 학위논문 작성의 일반적 원칙을 따르되,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구성한다.<개정 '11.07.28>

1. 표 지
2. 내 지
 - 가. 대표지
 - 나. 인준지
3. 본 문
 - 가. 목 차
 - 나. 그림 및 표목차
 - 다. 국문 및 외국어 초록
 - 라. 본문내용
 - 마. 참고문헌목록
 - 바. 부록, 색인, 기타

제8조(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 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은 별표 1의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에 의한다.<개정 '01.3.2, '02.2.25>

제9조(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재방법)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각 학과의 학문적 형식 또는 일반 논문 작성요령에 의한다.<개정 '11.07.28>

부 칙(1998. 11. 20)

이 내규는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02)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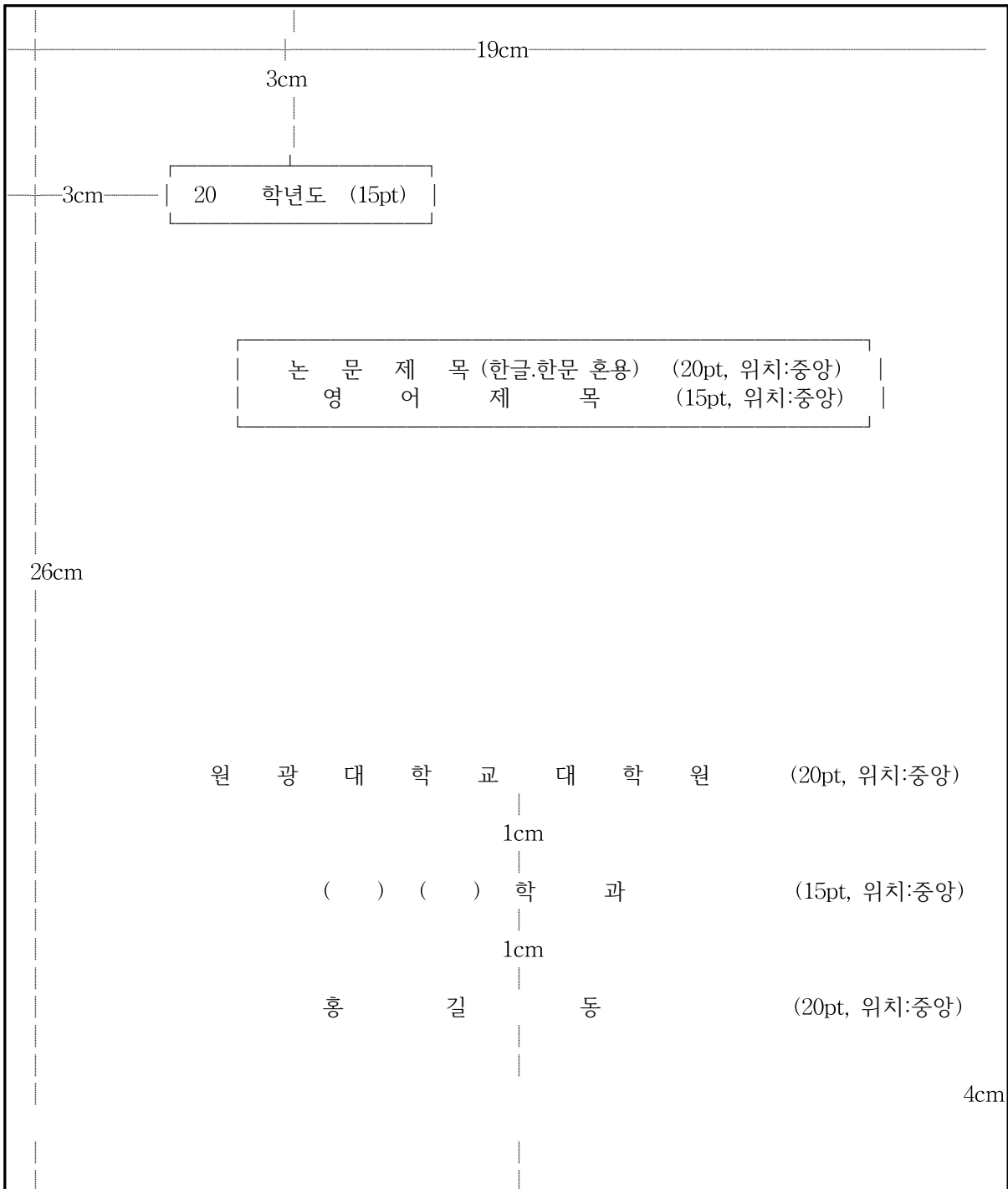
【별표 1】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표지인쇄 및 내용)

1. 규 격 : 4.6배판 (가로19cm × 세로26cm)
2. 지 질 : 모조지, 70파운드(70g/m) 이상
3. 인쇄방식
가.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한다.
나. 글자의 크기는 장은 15pt, 절은 13pt, 소제목은 12pt, 본문은 11pt, 주는 10pt로 한다.
4. 표지색깔 및 형식
가. 하 드카바 : 석사학위논문 - 짙은 감색(곤색)표지에 은색활자.
박사학위논문 - 흑색표지에 금색활자.
나. 소프트카바 : 석.박사 공히 회색 레자크 200g이상으로 한다.
5. 제본형식 : 포클로스 양장.
6. 표제인쇄 : 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0pt로 한다.
7. 학위논문의 체제와 순서
가. 표지(도해 1)
나. 내지
(1) 내표지(도해 2)
(2) 인준지(도해 3)
다. 본문
(1) 목차(도해 4)
(2) 그림 및 표목차
(3) 국문 및 영문초록
(4) 본문내용(도해 5)
(5) 참고문헌 목록(세밀히)
(6)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에만)
라. 등표지(도해 6)
8. 학위논문 본문형식
가. 목차의 세분은 장, 절, 항 등으로 하며, 기호는 1, 1, 가, (1), (가), 1), 가)등의 순으로 한다.
나. 도 및 표목차 : 표기순서는 수표, 도표의 순서로 하고 표1, 표2 및 도1, 도2와 같이 표시한다.
다. 본문내용 : 본문내용은 다음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론
(2) 본론
(3) 결론
라. 각주 : 각주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 면 밑, 장 후면 또는 논문말미에 종합 기재한다.
마. 부록 : 부록은 부록이라 쓴 백색 별지를 붙인다.
바. 참고문헌 : 논문작성에 이용한 국내외 서적, 논문, 기타의 순으로 그리고 가, 나, 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9. 석.박사 논문 제출자는 심사에 통과된 논문을 논문작성지침에 의하여 인쇄할 것.
10. 완성된 논문 제출은 석.박사 공히 책자화된 논문 1부를 심사위원 실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10부 및 논문수록 디스켓 1장을 중앙도서관 운영관리팀에 제출하고 확인증을 받아 두시기 바람.

【도해 1】

내표지 인쇄 및 규격



내표지 인쇄 및 규격

26cm	19cm		5.5cm
	논문제 목 (한글·한문 혼용) (20pt, 위치:중앙) 영 어 제 목 (15pt, 위치:중앙)		
	1.5cm		
	지도교수 () () ()		(15pt, 위치:중앙)
	7cm		
	1.5cm		
	이 논문을 () () 석사(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5pt, 위치:중앙)		
	1.5cm		
	20 년 월		(15pt, 위치:중앙)
	원 광 대 학 교 대 학 원 (20pt, 위치:중앙)		
1cm			
() () 학 과		(15pt, 위치:중앙)	
1cm			
홍 길 동		(20pt, 위치:중앙)	
4cm			

인준서 인쇄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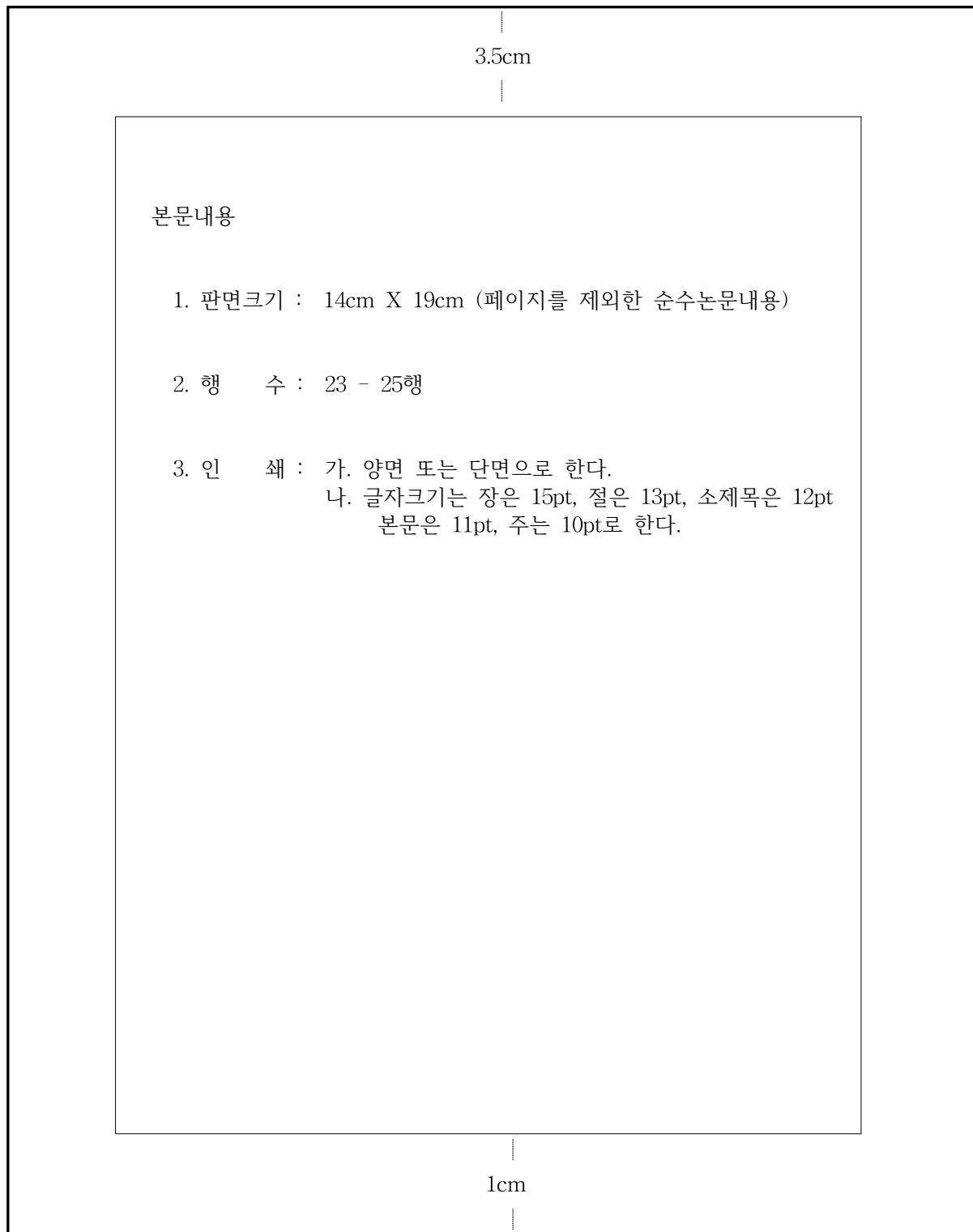
4cm			
4cm		홍길동의 () () 학 석사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pt)	
		4cm	
		심 사 위 원	(15pt, 위치:중앙)
		5cm	
		박사 = 심사위원장 () () () 심사위원 () () () 심사위원 () () () 심사위원 () () () 심사위원 () () ()	(15pt, 위치:중앙)
		석 사 = 심사위원장 () () () 심사위원 1cm () () () 심사위원 () () () 3.5cm 4.5cm	
		원 광 대 학 교 대 학 원 (20pt, 위치:중앙) 2cm 20 년 월 (15pt, 위치:중앙) 4.5cm	

【도해 4】

목차 인쇄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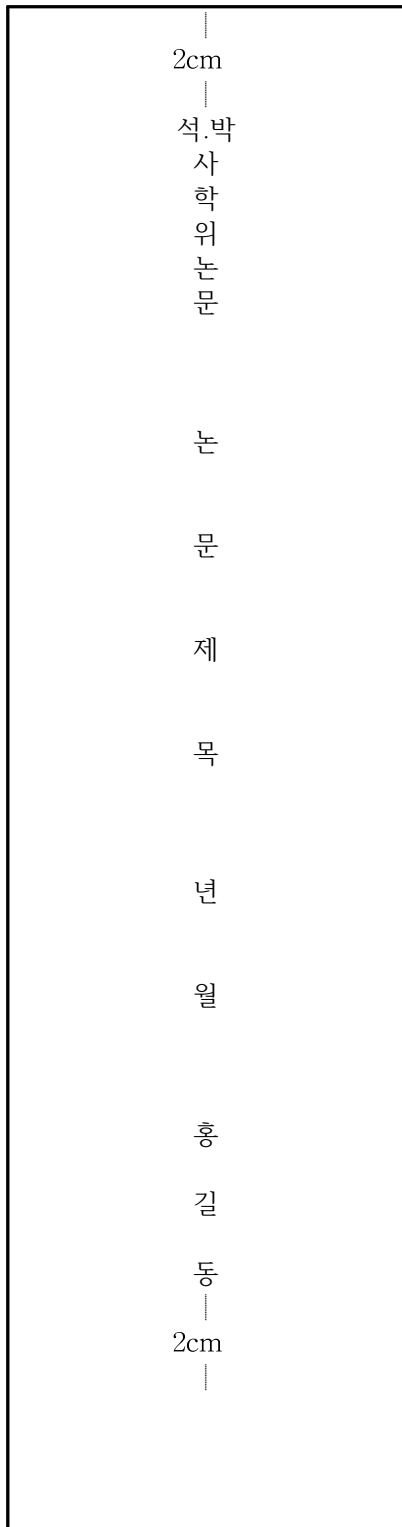
3cm			
		목	차
		4cm (위치:중앙)	
국문 및 영문 요약	_____		0
서 론	_____		0
제 1 장	_____		0
제 1 절	_____		0
제 2 절	_____		0
	_____		0
	_____		0
	_____		0
	_____		0
	_____		0
	_____		0
	_____		0
결 론	_____		0
참고문헌	_____		0
부 록	_____		0

본문 인쇄 및 규격



【도해 6】

등표지 인쇄 및 규격



2-2-13. 석·박사통합과정 내규

제정 2012. 08. 27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이하 "학칙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석사·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5.12.19>

제2조(정의) 통합과정이란 석사교육과정과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정원)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 ① 중도 포기자 및 중도 탈락자는 학칙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소속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5.12.19>

② 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 중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에서 정한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자에 한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 시킨다.

③ 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학과의 석사학위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과정으로 변경은 불허한다.

제6조(박사과정 재학인정) ① 통합과정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전공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석·박사학위의 수여)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및 「학위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석·박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8.12.04, '25.12.19>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및 내규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개정 '25.12.19>

부 칙(2012. 08.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04)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2-2-14. 학습경험 학점인정 및 제한에 관한 내규

제정 2018. 02. 12.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6조의1 학습경험 학점인정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12.19>

제2조(학점인정 대상 학습경험) 본 대학원 재학생의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력은 소속학과 대학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19.07.04, '22.02.25>

제3조(학점인정의 심의) ① 학과대학원위원회는 학습경험 학점인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1. 학습경험의 전공과의 연관성 여부
2. 학습경험의 학습과의 등가성 여부
3. 기타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 개별 면담을 수행할 수 있다.

⑤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는 평가기준(별표4)에 의거한다.

제4조(학점인정) ① 심의를 거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력은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하는 자는 6학점만 인정한다. <개정 '19.07.04, '22.02.25>

②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각 학과 교육과정의 전공과목에 한한다. <신설 2023. 7.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생의 경우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의 합이 아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7. 14.> <개정 2025. 12. 19>

학위과정	학점인정 합(편입학+학습경험) 최대범위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제5조(학점인정 신청)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은 소정 기간 내에 신청서(별표1.2.3)를 작성하여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 처리) 학습경험인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된 학과목의 성적은 평가 기준(별표4)에 의한 인정평가 점수에 따라 95-100점 A+, 90-94점 A, 85-89점 B+, 80-84점 B, 79점 이하는 F로 처리한다. 단, 필수 평가 항목에서 '하' 평가를 받는 경우 인정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F로 처리한다.

제7조(수강신청) 학습경험 학점인정으로 처리된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7. 14.]

부 칙(2018. 02. 12.)

이 시행규칙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07. 0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7. 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대상으로 본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별표1】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학 과		전 공	
학 번		이 름	
연구/제작기관		근무기간	년 월
교과목명		학 점	
[제 출 서 류] ※ 제출한 모든 서류의 목록을 적으시오.			
서 류 구 분	제출유무(○)	기 타 사 항	
1. 이력서			
2. 직무기술서			
3. 경력증명서			
4. 자격증 사본			
5. 포트폴리오 또는 작품 등			
본인은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된 문서와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학점인정 취소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주임교수: (서명)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표4】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 기준

평가요소	준 거		평점	비 고
내용 일치성*	상	• 평가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음	25	연구 및 근무(직무) 기술서 활용
	중	• 평가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15	
	하	•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준이 못됨	0	
내용 성취도	상	• 평가 교과목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설명할 수 있음	20	교과목 관련 내용의 성취정도
	중	• 평가 교과목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음	15	
	하	• 평가 교과목 관련 내용을 안다고 판단할 수 없음 • 평가 교과목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음	10	
재현 가능성	상	• 평가 교과목 관련 사항을 항상 절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15	산출 현시성 및 산출 정확성
	중	• 평가 교과목 관련 사항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적 지원)을 얻으면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10	
	하	•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 • 안내서 또는 인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5	
경험 빈도	상	•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연속 10년 이상 실시 •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5년 이상 실시	15	경력증명서 활용
	중	•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연속 3년 이상 실시 •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2년 이상 실시	10	
	하	•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연속 3년 미만 실시 •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2년 미만 실시	5	
검증 가능성*	상	• 신청자가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관련 역량을 확인받음 • 평가위원이 포트폴리오 등의 산출물을 직접 검증함	25	자격증,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 빙서류 활용
	중	• 관련 역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자가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음	15	
	하	• 관련 역량을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0	

* 필수 항목

2-2-15.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제정 2018. 02. 12.
전면개정 2018. 12. 04.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12.19>

제2조(석사논문대체 제도의 정의) 석사논문대체 제도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이외에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점 및 대체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3조(학위논문대체 실적 인정범위) 논문 대체의 인정 범위는 졸업시험, 작품, 특허출원이며 공통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4조(학위논문대체 학과신청) 석사학위논문 대체 인정을 원하는 학과는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2/3가 동의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별표1)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과는 1학기 경과 후 석사논문대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5조(학위논문대체 개인신청) ①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4. 6. 21.>

1. 2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자 <개정 2024. 6. 21.>
2.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승인한 학과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 <개정 2024. 6. 21.>
3. 수료생의 경우 석사논문대체 연구등록 또는 논문등록을 하였으며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 자 <개정 2024. 6. 21.>
- ② 석사논문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부터 석사학위논문 대체희망원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6. 21.>
- ③ 석사논문대체 희망원을 승인받은 자는 1학기 경과 후, 4학기부터 석사학위논문대체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 ④ 석사학위논문대체 심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본 규정 제1항 및 제3항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 6. 21.>
- ⑤ 석사논문대체 희망원을 승인받은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6조(학위논문대체 심사신청)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심사대상자는 아래의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1.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24. 6. 21.>
2. 별표2의 학점기준을 충족한 자 <개정 2024. 6. 21.>
3.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4. 6. 21.>
4. 심사 신청 1학기 전에 논문대체 희망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24. 6. 21.>
5. 수료생의 경우, 석사논문대체 연구등록 또는 논문등록을 하였으며,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한자 <개정 2024. 6. 21.>
6.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의 경우, 석사논문대체 심사신청 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자. <신설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7조(학위논문대체의 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대체심사를 위하여 본 대학원이 정하는 심사절차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1. 공통 : 심사요구서 성적증명서
 2. 졸업시험 : 졸업시험 실시계획서
 3. 작품 : 작품 실물, 작품설명서, 전시회 또는 공연 팸플렛,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창작 작품에 한함)
 4. 특허출원 : 대학원 과정 입학 이후 출원, 등록된 특허증 및 기술보고서
- ② 논문 대체 심사는 1회 이상으로 하며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일정을 따른다.
- ③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위촉하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2/3 이상 “가” 판정을 한 경우 학위논문대체로 인정한다. 단,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④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평가표, 증빙서류, 대체 결과물(출력본)은 학과에서 5년 동안 보관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8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개정 '25.12.19>

[본조신설 2024. 6. 21.]

부 칙(2018. 02. 12.)

이 학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04.)

이 시행규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07. 0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06.)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논문대체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20. 07. 03.)

이 시행규칙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06. 21.)

이 시행규칙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별표1】석사학위논문 대체 인정 신청서

1. 신청학과

--

2. 논문대체인정항목

항목	공통기준 충족여부	구체적 기준(항목별 최소3가지 이상)

3. 학과교수 동의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학과는 20 학년도 학기부터 위의 항목을
석사학위논문 대체물로 인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주임교수 : (서명)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표2】석사학위논문 대체심사 신청 공통기준

항목	공통기준	전공 이수학점 기준
졸업시험	1. 전공교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한다. 2. 출제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 3. 3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인정기준으로 한다	30학점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작품	-학과의 기준에 따른다. 단, 학과기준을 최소 5가지 이상 정할 것- 1.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작품기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전시회 또는 공연은 팸플릿을 제출한다. 3. 창작 작품은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출원	1. 특허의 경우, 대학원 과정 입학 이후 출원, 등록한 특허에 한한다. 2. 특허등록 전문 및 기술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술지 논문게재	1. 연구재단 등재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학위논문 대체물로 인정한다. 2. 단독 또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총 저자수가 2명 이내 인 경우에만 인정함) 3.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에 게재한 논문도 인정한다.	24학점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의 경우, 석사논문대체 심사신청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2-2-16. 학석사 연계과정 내규

제정 2019. 10. 01.

개정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칙 제6조제2항에 의거 본 대학교 및 일반대학원 동일 전공 및 학과(부)의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12.1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내규는 본 대학교 학칙, 학칙시행규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5.12.19>

제3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연계과정 모집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모집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② 연계과정 모집인원은 모집 당해 학년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 또는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7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5년(3학기)

제5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이수예정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지원가능 학과(부)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해당학과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2.07.20, '25.04.09>
2.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총 68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직전학기 총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단, 본교와 외국대학 합작학과 4학년 편입생은 평균평점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4.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5. 편입생은 제외한다. 단, 본교와 외국대학 합작학과 4학년 편입생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 ② 연계과정 대학원 지원학과는 학사과정의 주전공과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2.02.25>
- ③ 이수 예정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개정 '22.02.25>
 2.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개정 '22.02.25>
 3. 학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제6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 이수 예정자는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성적,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 및 기타사항 등을 평가하여 대학원장이 선발한 후 결과를 지원자 소속 대학과 교무처에 통지한다.
- ③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위원회는 각 학과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 전(全) 학년 성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이수예정자는 학사학위과정 중 대학원 과목을 학사 5~6학기에는 매 학기 기준학점 외에 최대 3학점까지, 7~8학기에는 매 학기 기준학점 외에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2.02.25, 2023. 7. 14.>

- ② 이수 예정자는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2.02.25, 2023. 7. 14.>
- ③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2.02.25>

제8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이수예정자는 대학원 입학 전까지 연계과정 지원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 ②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는 대학원 지원학과를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 ③ 학과(부)장 또는 대학원 전공주임은 이수 예정자를 위한 학·석사공통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학사과정 조기졸업) ① 연계과정 이수예정자는 7학기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계과정 학사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2.02.25>

1.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제12조에서 정한 특례를 제외한 학사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개정 '22.02.25>
2. 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한 자
3. 대학원 입학등록을 필한 자
- ② 이수 예정자는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연계과정 중도포기로 간주하여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학점의 추후 인정이 불가능하고, 수혜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연계과정 학사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계과정 선발 전 소속 학과(부)의 졸업소요학점과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제10조(대학원 입학 및 수료) ①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최종학기에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여 입학 후 등록해야 한다.<개정 '22.02.25>

- ②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석사과정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계과정 중도포기자는 연계과정 선발전 소속 학과(부)의 졸업학점과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제11조(등록) ①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 ② 연계과정 이수자 중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과정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제12조(이수 예정자에 대한 특례) ① 7학기로 졸업하는 이수예정자는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졸업시험 등)을 면제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는 졸업논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2.02.25>

- ② 이수 예정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권한으로 석사과정의 입학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접의 경우는 예외 없이 진행한다.
- ③ 이수 예정자에게는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2.02.25>
- ④ SW 전공학과(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디지털콘텐츠공학과, SW융합학과) 이수 예정자는 학사과정 재학(6,7,8학기) 중 장학금을 총 2회에 한하여 사업기간 내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2.02.25>

제13조(연계과정 포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

1. 대학원 등록이전에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
2. 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학사과정 졸업 직후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거나, 대학원 입학(학기시작)전 등록을 포기한 자<개정 '22.02.25>
- ② 연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연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별지 제4호 서식의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사과정 재학생은 교무처장, 석사과정 재학생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중도포기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1학기 초 지도교수 지도하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1.01.11>

제15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중간발표 이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승인된 날로부터 각 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경과되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1.01.11>

제16조(학위청구논문[대체]제출자격) 학석사 연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대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1.01.11>

1.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제17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1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 한다. <본조 신설 '21.01.11>

제18조(종합시험 응시자격)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1.01.11>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2.02.25>
2.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이고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개정 '22.02.25>

제19조(지도교수 배정시기) 학석사 연계과정의 입학생은 1학기 초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배정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1.01.11>

제20조(지도교수 자격) ① 지도교수 자격은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1.01.11>

-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지도교수는 교원의 정년이 최소 3학기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동일 전공의 정년 3학기 이상인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의 정년 퇴임 시 공동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규정은 이수 예정자가 학사과정 재학인 경우 원광대학교 학칙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대학원 재학인 경우 대학원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2.02.25>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 10. 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7. 2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7. 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04. 0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6. 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0. 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5. 4. 9., 2025. 6. 27.>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가능 학과

대학	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농식품융합대학	산림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22.07.20>
	생명환경학과<신설 '22.07.20>
	원예산업학과<신설 '22.07.20>
	식품생명공학과<신설 '25.10.24>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자연과학대학	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생명과학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미술과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실내산업디자인학과
창의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디지털콘텐츠공학과
	SW융합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화학융합공학과
	도시공학부<신설 '22.07.20>
	건축공학과<신설 '22.07.20>
	건설환경공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대학원 지원학과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학 번		학 년		
총평균성적	/100	총이수학점	학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E-mail				
주 소				

위와 같이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인)

첨부 1. 추천서 1부 2. 학업계획서 1부 3.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끝.

원광대학교총장 귀하

추천서

대학원 지원학과					
소속	대학	학과(부)	전공		
성명		학번		학년	

추천사유
20 년 월 일

추천자 인적사항	
성명	(인)
소속	대학 학과(부)
직급	

학 업 계 획 서

대학원 지원학과					
소 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학 업 계 획					
※대학원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학습 및 연구계획 등을 작성					

※ 용지부족 시 별지사용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

대학원 지원학과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학·석사연계과정에 따른 장학금 수혜금액			₩	원	
중도포기 사유					

상기 본인은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석사 연계과정을 포기하고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주임교수(대학원): 인

학 과 장 (학 부): 인

원광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2-2-17.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내규

제정 2019. 11. 19.

개정 2025. 12. 19.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설치하는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12.19>

제2조 (용어의 정의) '협동과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독립된 단일학과를 구성하여 학제간 또는 학과간 공동연구를 위해 설치된 학위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학과 및 전공) 학과간 협동과정의 설치학과와 전공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본 과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되고, 위원은 각 참여 학과의 교수가 된다.

제6조(위원회위원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본 과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3. 본 과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5.12.19>

부 칙(2019. 11.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유형 변경) 이 시행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의 유형을 내규로 한다.